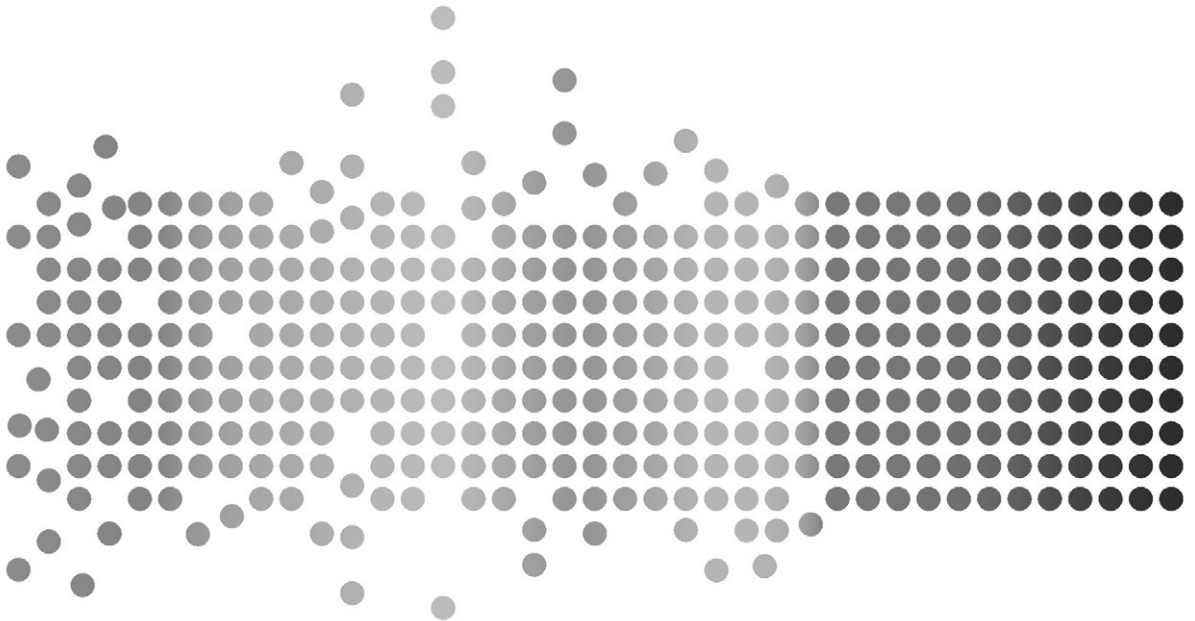




농업인의 노후준비실태와 정책대안

최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47-30

농업인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대안

발행일	2012년
저자	최경환 외
발행인	이동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우: 130-710)
전화	대표전화: 02) 3299-4000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등록	1979년 5월 25일 (제6-0007호)
인쇄처	대경기획
	02-2263-1292
	E-mail: dm1293@magicbill.co.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ISBN 978-89-8187-314-1 93330

머리말

노후 소득보장 수단인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것은 1988년부터이다. 물론 이전부터 특수직역연금이 실시되고 있었으나 농업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1988년부터이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직장근로자를 주 대상으로 하였고 농업인 등 자영자의 가입에 대해서는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다. 자영자의 경우 소득과약이 어렵고 고소득 자영자는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가 하면 농업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은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의무가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을 외면했으며 담당 부처에서도 등한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농업인의 국민연금 확대가 정책적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94년 UR협정이 체결되어 WTO체제가 본격화되면서부터이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도입되는 가운데 1995년 국민연금의 농어촌지역 확대와 맞물려 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농업인의 보험(사회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소득 과약이 어려워 가입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실무적인 한계로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은 저조하였다. 더욱이 1997년부터 도래한 IMF 외환위기는 그나마 연금에 가입했던 농업인의 가입을 중단하게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현재 고령 농업인이나 은퇴 농업인 대다수는 기본적 노후보장수단인 국민연금마저 받지 못해 힘든 노후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가족제도 하에서

성장하여 자녀들의 뒷바라지가 곧 자신의 노후대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전통적 대가족제도는 핵가족화, 분산가족화되었고 부모부양의식도 약화되었다. 게다가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활발하게 영농 활동을 하고 있는 청·장년 농업인도 스스로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면 고령 농업인이나 은퇴 농업인 못지않게 노후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장년 농업인의 충실한 노후준비는 당사자 개인은 물론 국가사회적으로도 장차 사회를 안정시키고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장년 농업인들의 노후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노후준비를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경환 선임연구위원 주관 하에 박대식 연구위원과 최용욱 연구원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2012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8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12
제4절 연구방법	12
 제2장 노후준비의 이론적 검토	17
제1절 노후준비의 의의와 유형	17
제2절 농업인의 고령화 실태	18
제3절 고령화와 노후준비 방법	23
 제3장 한국의 공적 노후보장대책의 실태와 문제점	35
제1절 소득보장정책	35
제2절 의료보장정책	51
 제4장 농업인의 노후준비 실태	61
제1절 설문조사 응답 농업인의 일반적 특성	61
제2절 농업인의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가입 실태	63
제3절 농업인의 건강관리 실태	72
제4절 농업인의 노후 준비 실태	76
제5절 농업인의 노후 준비 계획	88

제5장 농업인 노후준비를 위한 정책대안 99

 제1절 기본방향 99

 제2절 정책대안 101

참고문헌 99

부록 99

표 목차

〈표 1- 1〉 주요 국가별 인구고령화 진전 현황 비교	6
〈표 1-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현황(2012.12 현재)	15
〈표 2- 1〉 농가인구 전망	19
〈표 2- 2〉 농가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0
〈표 2- 3〉 농가호수 전망	22
〈표 2- 4〉 농림어업 취업자 수 동향	22
〈표 2- 5〉 농림어업 취업자 전망	23
〈표 2- 6〉 주요 연령계층별 인구 비율	24
〈표 2- 7〉 시·도별 고령인구 및 고령가구 비율(2012)	24
〈표 2- 8〉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5
〈표 2- 9〉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65세 이상)	26
〈표 2-10〉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65세 이상)	26
〈표 2-11〉 고령화 리스크의 유형과 특징	29
〈표 2-12〉 개인의 고령화 리스크 유형별 대응수단	31
〈표 3-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65세 이상)	37
〈표 3- 2〉 지역별 빈곤인구율과 수급율 비율	38
〈표 3- 3〉 2012년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액과 상세기준	40
〈표 3- 4〉 농지연금 가입자 현황	46
〈표 3- 5〉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운영방식 비교	47
〈표 3- 6〉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내용	52
〈표 4- 1〉 설문조사 응답 농업인의 일반적 특성	58
〈표 4- 2〉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여부	60
〈표 4- 3〉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	61
〈표 4- 4〉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월)	61

〈표 4- 5〉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담 정도	62
〈표 4- 6〉 국민연금 보험료의 추가 납부 의향	62
〈표 4- 7〉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	63
〈표 4- 8〉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의향	63
〈표 4- 9〉 연금보험료 지원 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의향	64
〈표 4-10〉 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월)	64
〈표 4-11〉 배우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담 정도	65
〈표 4-12〉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지원제도 인지 정도	66
〈표 4-13〉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월)	66
〈표 4-14〉 개인연금 가입 실태	67
〈표 4-15〉 개인연금 미 가입 이유	68
〈표 4-16〉 향후 개인연금 가입의사	68
〈표 4-17〉 자신의 건강상태	69
〈표 4-18〉 만성질병 수	69
〈표 4-19〉 농부증	70
〈표 4-20〉 생활만족도	71
〈표 4-21〉 미래 행복도 진단	71
〈표 4-22〉 고독감 인지 빈도	72
〈표 4-23〉 건강 측면 노후준비 정도	72
〈표 4-24〉 노인의 기준(시작) 연령	73
〈표 4-25〉 장수를 축복으로 생각하는 정도	74
〈표 4-26〉 장수를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74
〈표 4-27〉 노후준비 시작 시기	75
〈표 4-28〉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분야(1순위)	76
〈표 4-29〉 월 평균 개인 최소생활비	76
〈표 4-30〉 월 평균 부부 최소생활비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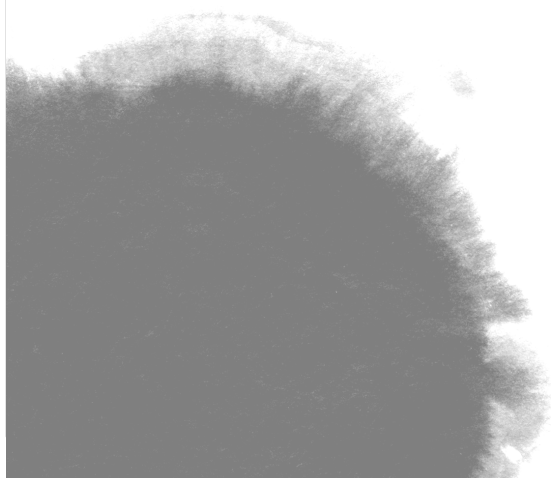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표 4-31〉 월 평균 개인 걱정생활비	77
〈표 4-32〉 월 평균 부부 걱정생활비	78
〈표 4-33〉 노후준비에 관한 교육이나 상담 경험	79
〈표 4-34〉 향후 노후준비에 관한 교육이나 상담 참여의사	79
〈표 4-35〉 현행 노후준비 노력	80
〈표 4-36〉 현행 노후준비의 충분 정도	80
〈표 4-37〉 노후 생활비 마련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노후준비 노력(1순위) ..	81
〈표 4-38〉 생활비 마련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82
〈표 4-39〉 건강관리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82
〈표 4-40〉 보건·의료비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83
〈표 4-41〉 주거 마련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83
〈표 4-42〉 소일거리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84
〈표 4-43〉 취미·여가 생활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84
〈표 4-44〉 바람직한 노후 준비 방식	85
〈표 4-45〉 현재 생활과 노후생활의 비교 전망	86
〈표 4-46〉 영농 중단 의사	87
〈표 4-47〉 영농 중단 희망 연령	87
〈표 4-48〉 영농 중단 후 소일거리(1순위)	88
〈표 4-49〉 농지연금 인지도	89
〈표 4-50〉 노후대책으로 농지연금제도 활용의사	89
〈표 4-51〉 농지연금을 노후대책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	90
〈표 4-52〉 경영이양직불제 인지도	91
〈표 4-53〉 경영이양직불제 활용의사	91
〈표 4-54〉 영농중단 시 농지처분 계획	92
〈표 4-55〉 노후를 위한 주택	93
〈표 4-55〉 노후의 희망사항(복수응답)	94

그림 목차

[그림 2- 1]	농가인구 피라미드 그래프	20
[그림 2- 2]	생애주기설에 따른 개인의 소득 및 소비지출의 변화	28
[그림 3- 1]	현행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33
[그림 3- 2]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일반/재산특례)	35
[그림 3- 3]	공적연금별 연금 수급 개시 시기	41
[그림 3- 4]	기준소득월액 구간별 업종별 가입자 분포(2011)	43
[그림 3- 5]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방식	50

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가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식생활(영양) 개선, 의료기술의 발달 및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등으로 인구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도시지역에 비해 20년 정도 고령화가 앞서가고 있는 우리 농촌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지 오래되었으며, 일부 농촌(군)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다.

<표1-1> 주요 국가별 인구고령화 진전 현황 비교

(단위 : 년도, 년수)

국 가	도달년도			증가 소요연수	
	7%	14%	20%	7%→14%	14%→20%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이태리	1927	1988	2006	61	18
미 국	1942	2015	2036	73	21
독 일	1932	1972	2009	40	37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건강 등이 갖추어져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준비된 장수(長壽)는 축복이지만, 준비 안 된 장수는 재앙’이기 때문이다.

노후준비는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다수는 당장의 생활에 급급하여 자칫 노후준비를 소홀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노후를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만 맡겨 놓기보다는 일정 부분 국가적으로 간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못지 않은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누구든지 연령, 성별, 직업, 지역 등에 관계 없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처한 상황에 따라 활용가능한 수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에서는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농어업인을 포함한 농어촌주민들이 국민연금을 노후소득대책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UR협상이 1994년에 체결되어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충격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권장하였다. 그러나 농업인의 보험(사회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소득 파악이 어려워 가입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실무적인 한계로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은 저조하였다. 더욱이 IMF 외환위기와 열악한 농가경제 여건 등으로 국민연금은 국민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가입률이 높지 않았으며, 가입한 경우에도 낮은 소득등급에 편중되어 있어 노후소득대책으로서 불충분한 실정이다. 대다수 농업인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¹⁾

농업인들의 노후준비는 일차적으로 본인의 책임 하에 추진해야 하지만, 현재 상태로 방치할 경우 장차 고령자 간 소득 격차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1995년에 가입한 농업인의 경우 2015년이 되어야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비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²⁾ 수급자는 오래전부터 발생하고 있어 이미 은퇴한 고령자 간에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의 청·장년 농업인이 노후대비를 소홀할 경우 장차 본인 자신도 문제이지만 국가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결국 차세대에게 커다란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³⁾. 따라서 지금이라도 농업인의 노후준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충실하게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농업인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정도와 노후준비 실태를 조사하여 농업인이 노후준비를 보다 충실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자영자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대한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자영자의 보험료 미납을 법적 강제를 회피하는 제도상의 불순응의 문제로 보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자영자가 보험료 납부능력이 낮은 저소득집단임을 강조하는 견해이다(김수완·김상진 2012, p.5). 농업인의 경우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없다고 하기 어려우나 대다수 농업인의 경우 후자에 가깝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2) 공무원연금은 1960년, 군인연금은 1963년, 사학연금은 1975년에 각각 시작되었다.

3) 김혜진(2012)은 중년층이 자신의 노후가 현재 생활과 비교하여 부정적이라고 인식하고 하고 있는 바, 이들이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식의 체계적인 제공이 필요하며, 인구사회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p.75).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노후 대책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으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다. 먼저 일반 국민의 노후 준비와 관련된 연구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문제부터 다층 소득보장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박찬용 등(2000)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는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행정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석재은 등(2000)의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 방안 연구」는 노인의 평균소비수준은 50대 근로계층의 60%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노인 소득보장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신종욱·이정호(2004)의 “노후재정의 핵심과 노후 보장체계의 확립”은 노후는 경제적 위험⁴⁾에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노후 재정의 핵심은 노후 위험관리와 투자 효율성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은퇴 이후의 위험관리상 최선의 방안은 연금제도이며, 다층구조(연금제도)는 투자의 분산화(다양화)라는 의미 외에 노후 재정의 위험관리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석재은(2005)의 “고령사회 대비 노후 소득보장정책의 쟁점과 발전 방향”은 국가, 시장(기업), 개인이 노후 소득보장에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노후 소득보장에서 빈곤을 방지하는 기초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공적 연금과 공공부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검토하였다.

⁴⁾ 노후재정을 위협하는 요소로는 소득대체율저하 위험, 장수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정치적 위험 및 투자 위험이 있다.

김시원 등(2006)은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 준비 및 노후 소득보장 실태에 대한 제1차 국민 노후 소득보장 패널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 노후소득보장 관련 패널조사체계를 갖추어 이 분야의 연구와 정책 추진에 기초자료를 축적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후 국민 노후 소득보장 패널조사 자료를 토대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우혜봉(2010), 김혜진(2012) 및 석상훈·김현수(2012) 등의 연구가 있다.

윤석명 등(2007)의 “고령사회를 대비한 한국적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과 윤석명 등(2011)은 급속한 고령화속에서 정치적·재정적 측면에서 제도별로 지속 가능하고, 제도 적용집단별로 적정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한국적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추진하였다.

최근에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국민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후준비지표 개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민관 합동으로 노후준비지표를 개발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전국민의 노후준비 정도를 파악하였다.⁵⁾ 석상훈 등(2011)은 경제적 노후 준비, 사회·정서적 노후 준비 및 신체적 노후 준비의 세 분야 별로 각각 10개의 지표를 설정하였다.⁶⁾ 또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골든라이프연구센터(2012.9)의 “KB노후준비지수로 살펴본 한국인 노후 준비 실태”는 재무적 관점과 비재무적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가중치를 부여하여 비은퇴가구의 노후준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시도하였다. 이 보고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후준비는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시하면서, 소득과 부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재무적 노후준비도 뚜렷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어 저소득층과

5) 노후준비지표는 총 42개 지표로 사회적 관계 11개 지표, 건강 12개 지표, 소득과 자산 12개 지표, 여가 7개 지표이다.(보건복지부 2012.7.16 보도자료: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민간과 공동으로 노후준비지표 개발). 지표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6) 지표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자영업자 등 노후준비 취약층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개발되는 지표들을 본 연구에서도 적용해보려고 검토해 보았으나 농업인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일반 국민의 노후준비나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연구는 많고 계속 수행되고 있으나 농촌 노인이나 농업인의 노후 실태와 준비에 관한 연구는 다음 몇 가지에 불과하다. 김인숙(1991)의 “농가의 노후의 경제적 요구와 대비수준에 관한 연구”는 농가 중 중년기 가계를 대상으로 하여 노후의 경제적 요구와 대비수준을 분석하였다.

한정자 등(2002)의 『농촌지역 노인복지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는 농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생활 실태 및 복지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여성의 관점에서 농촌지역 노인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농촌노인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을 ①소득보장정책, ②의료정책, ③복지서비스, ④주택정책, ⑤사회적 서비스 정책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박대식(2004)의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실태 분석』은 ①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②현행 농촌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지원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노인들의 영농활동,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 자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소비·저축 및 부채 실태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은구 등(2005)의 『거주지역·경제능력 등에 따른 농촌노인의 유형화 및 맞춤형 복지정책 연구』는 농촌노인 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실증적 기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사회 구조를 유형화하고, 그 유형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노인복지정책 모형을 개발하였다.

박대식 등(2006)의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대책』은 농촌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실태를 파악하여 농촌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선대책의 기본방향과 유형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김정호 등(2007)의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 지원제도 도입방안」은 바람직한 농업구조 실현을 뒷받침하고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령농 생활안정제도의 도입 및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경환 등(2007)의 「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에 관한 연구」는 청장년 농업인들도 노후를 준비할 겨를이 없었던 고령농업인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분하게 노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 고령화 심화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기초노령연금과 농지연금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은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들이 영농에서 은퇴하더라도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1. 연구의 범위

노후준비는 경제적(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경제적(비재무적) 측면도 중요하다. 따라서 경제적,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측면이 함께 다루어져야 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하면서 의료보장을 다루는데 머물렀으며, 본 연구의 내용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고령사회에서는 소득과 보건·의료 이외에 주거보장도 중요하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고령자들은 건립연도도 알 수 없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노후 주택에서 난방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로 생활하고 있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2. 연구내용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노후준비의 의의와 유형 및 노후준비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농업인의 고령화 실태와 전망에 대하여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적 노후보장대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 본다. 다만, 연구범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소득보장정책과 의료보장정책에 국한한다. 제4장에서는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 실태를 살펴보고, 농업인의 노후준비 실태를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파악한다. 제5장에서는 이론적 검토와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농업인이 자신의 노후준비에 충실하도록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제4절 연구방법

이 연구는 주로 문헌 검토와 설문조사결과의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먼

저, 노후준비나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문헌 및 자료를 수집·검토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자영자 특히 농업인의 노후준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손으로 꼽을 정도였다. 농업인의 소득보장과 관련한 그나마의 연구도 영세·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고 청·장년 농업인의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는 한 두 개에 불과하다.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에는 농업인의 노후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되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2.12월 현재 3,000명이다. 그동안 2천여 명으로 운영되어 오던 현지통신원을 1,000명으로 정리하고 신규로 2,000명을 위촉하였다. 이들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정 현안에 대하여 수시로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선정해 놓은 농업인들이다. 시도별로 적절하게 인배되어 있으나 정확하게 농업인을 대표하는 표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연령, 학력, 영농규모 등이 현재의 농업인 분포와 상이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전국의 농업인의 평균치보다는 젊고 학력이 높으며, 영농규모도 큰 편이다. 그러나 이들의 견해가 일반 농업인들과 크게 다르다고 할 정도로 표본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조사표는 선행연구에서 활용되었던 조사표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조사 설계의 적합성과 조사 문항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사는 2012.11.15~11.30 기간에 우편조사로 실시되었다. 조사표는 65세 이하 현지통신원에게만 송부하였으며 약 2천 5백명이다. 현지통신원의 분포는 <표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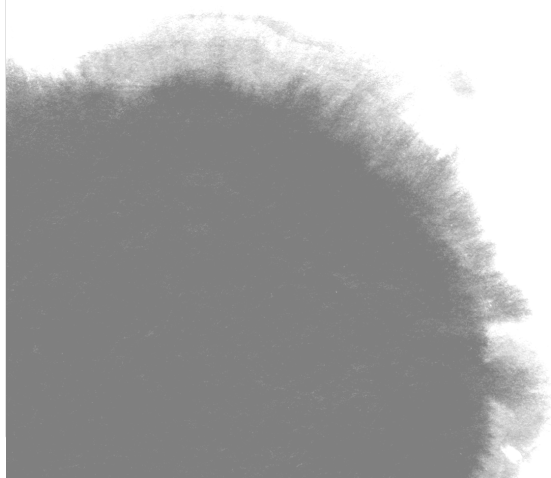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표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현황(2012.12 현재)

단위: 명, %

구분	단위 : %	기존		신규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지역	경기	92	9.2	241	12.1	333	11.1
	강원	90	9.0	217	10.9	307	10.2
	충북	87	8.7	207	10.4	294	9.8
	충남	134	13.4	275	13.8	409	13.6
	전북	106	10.6	230	11.5	336	11.2
	전남	165	16.5	295	14.8	460	15.3
	경북	173	17.3	269	13.5	472	15.7
	경남	139	13.9	240	12.0	379	12.6
	제주	14	1.4	24	1.2	38	1.3
	기타(광역시)	-	-	2	0.1	2	0.0
	무응답 포함 합계	1,000	100.0	2,000	100.0	3,000	100.0
연령	39세 이하	17	1.7	158	7.9	175	5.8
	40대	98	9.8	372	18.6	470	15.7
	50대	329	32.9	799	40.0	1,128	37.6
	60대	244	24.4	582	29.1	826	27.5
	70세 이상	312	31.2	89	4.5	401	13.4
	무응답 포함 합계	1,000	100.0	2,000	100.0	3,000	100.0
품목	논벼	417	41.7	553	28.5	970	32.3
	과수	210	21.0	369	19.0	579	19.3
	채소	159	15.9	540	27.8	699	23.3
	특작	25	2.5	97	5.0	123	4.1
	화훼	27	2.7	56	2.9	83	2.8
	전작	20	2.0	83	4.3	103	3.4
	축산	82	8.2	214	11.0	296	9.9
	기타	16	1.6	27	1.4	43	1.4
	무응답 제외 합계	956	95.6	2,000	100.0	2,956	98.5
	무응답	44	4.4	-	-	44	1.5
	무응답 포함 합계	1,000	100.0	2,000	100.0	3,000	100.0
경지 면적	0.5ha 미만	38	3.8	251	13.3	289	9.6
	0.5~1.0ha 미만	97	9.7	298	15.8	395	13.2
	1.0~1.5ha 미만	137	13.7	268	14.2	405	13.5
	1.5~2.0ha 미만	139	13.9	177	9.4	316	10.5
	2.0~3.0ha 미만	179	17.9	268	14.2	447	14.9
	3.0~5.0ha 미만	154	15.4	252	13.4	406	13.5
	5.0~7.0ha 미만	60	6.0	138	7.3	198	6.6
	7.0~10.0ha 미만	42	4.2	108	5.7	150	5.0
	10.0ha 이상	47	4.7	126	6.7	173	5.8
	무응답 제외 합계	893	89.3	2,000	100.0	2,893	96.4
	무응답	107	10.7	-	-	107	3.6
	무응답 포함 합계	1,000	100.0	2,000	100.0	3,000	100.0

2장

노후준비의 이론적 검토





제2장 노후준비의 이론적 검토

제1 절 노후준비의 의의와 유형⁷⁾

‘노후’는 경제적, 신체적, 역연령(曆年齡)적인 측면에서 정의가 가능하다.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농업 등 각종 경제활동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노후와 유사한 개념으로 은퇴, 정년(停年)과 정년(定年) 등이 있다. 이들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은퇴(隱退)는 직임(職任)에서 물러나거나 세속의 일에서 손을 떼고 한거(閑居)하는 것을 뜻한다. 정년(停年)은 공무원이나 기타 직원이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되어 있는 연령(停限年齡), 즉 어떤 직무에 종사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정년(定年)은 연금이 지급되는 연령, 즉, 근로로부터의 은퇴에 따른 소득의 결여를 각종 연금에 의해 충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노후는 신체적으로는 인체의 노화로 활동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누구나 자연스럽게 당면하는 인생의 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역연령적으로는 일정한 연령(예: 60세 또는 65세) 이후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일정한 연령은 논자와 분석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노후’는 일정한 고연령에 도달한 이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노후는 각종 소득활동으로부터 ‘은퇴한 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7) 최경환(2007)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노후’는 경제적, 신체적, 역연령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연령적 측면에서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때부터를 ‘노후’로 보았다. 국민연금 수급연령도 현재는 61세부터이나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61세 이후를 노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1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다든가, 농업인의 상당수가 60대인데도 왕성하게 영농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65세까지를 청·장년 농업인으로 보고 이들의 노후준비 실태를 파악하여 대안을 모색하려고 했다.

‘노후 대책’은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가족적, 사회적 측면 등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측면(소득)을 주로 검토 대상으로 하고 건강 측면을 검토하였다. 이외에 사회·정서적 측면도 중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는데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소득, 건강 이외에 고령자의 주거부문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문이다. 현재 농어촌지역 고령자들의 상당수는 건립연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낡고 난방도 제대로 안되는 집에서 살고 있어 노후의 주거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제2절 농업인의 고령화 실태

여기에서는 농가인구 및 농림어취업자의 고령화 실태와 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⁸⁾. 농업인의 고령화만을 살펴보는 것보다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이다.

8) 이 부분은 한 석호 외(2012.6)를 정리한 것이다.

1. 농가인구

1980년 농가인구 수는 1,083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28.4%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343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7.1%에 해당하여 과거 25년 전 농가인구의 32%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감소는 도시와 농촌의 상대소득 격차의 심화가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고려되며, 복지 및 생활여건, 자녀의 교육, 지방도시의 행정구역개편 등에 따라 앞으로도 농가인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농가인구는 전년 296만 명보다 2.2% 감소한 290만 명으로 예상되며 2017년 262만 명, 2022년 232만 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전체인구 중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5.8%, 2017년 5.1%, 2022년 4.5%로 감소할 전망이다.

<표2-1> 농가인구 전망

	단위	2005	2011	2012 (추정)	2017	2022	연평균 변화율(%)		
							12/11	17/12	22/17
농가인구	천 명	3,434	2,962	2,898	2,619	2,323	-2.2	-2.0	-2.4
65세 이상 농가인구비율	%	29.1	33.7	34.7	38.7	43.6	3.0	2.2	2.4
총인구 중 농가인구비율	%	7.1	6.0	5.8	5.1	4.5	-2.6	-2.4	-2.6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출처: 한석호 등(2012)

농가인구 수 변화는 규모에서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관심 분야는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그림2-1>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의 성·연령별 인구피라미드로 2005년까지도 농가인구의 젊은 연령층이 존재하나, 50대, 60대를 중심으로 농업생산이 고령화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010년 이후 고령층은 더욱 고령화되고, 젊은 연령층은 감소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가인구 구성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역피라미드형을 이루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피라미드 구조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점차 60세 이상의 고령사회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인구의 구조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2012년 34.7%에서 점차 상승하여 2017년 38.7%, 2022년 43.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전국인구의 65세 비율인 17.2%에 비하면 약 3배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연령층(20~64세) 감소는 농가소득 감소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며, 농가인구가 고령화될수록 저소득 계층에 속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고령 농업인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2-2> 농가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005	2011	2012	2017	2022
인구구성비 (%)	100.0	100.0	100.0	100.0	100.0
- 0~14	9.8	8.0	7.6	7.0	6.3
- 15~64	61.1	58.3	57.6	54.2	50.1
- 65세 이상	29.1	33.7	34.7	38.7	43.6
총부양비	63.6	71.5	73.6	84.4	99.8
유소년부양비	16.0	13.6	13.3	12.9	12.6
노년부양비	47.6	57.9	60.3	71.4	87.2
노령화지수	298.4	424.1	454.7	552.5	68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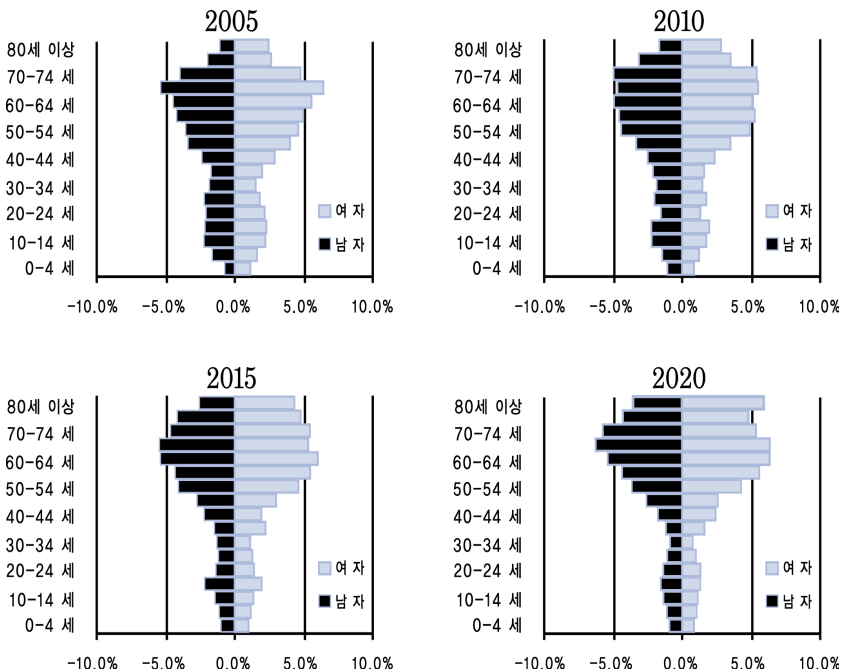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P(Korea Agricultural Population model)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로 노년부양비는 2005년 47.6에서 2012년 60.3, 2022년에는 87.2로 증가될 전망이나, 유소년부양비는 유소년인구의 감

소로 2005년 16.0에서 2012년 13.3, 2022년에 12.6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농가인구의 총부양비는 2005년 63.6에서 2012년 73.6, 2022년 99.8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소년인구와 노년인구의 비인 노령화지수는 2005년 298.4로 노년인구가 유소년인구 수보다 약 3배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454.7, 2022년 689.7로 전망되어 2022년에는 노년인구가 유소년인구수보다 약 7배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2-1> 농가인구 피라미드 그래프



주: 가입여성출산율, 연령별 사망률 전망치는 통계청자료를 이용함.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P(Korea Agricultural Population model)

2. 농가호수

2011년 농가호수는 116만 호이며, 2012년 농가호수는 전년보다 1.1% 감소한 115만 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농가호수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7년 109만 호, 2022년 102만 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후 농가호수 감소율은 농가인구 감소율보다 완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 요인은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의 부부가구 또는 독거농가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가호수 당 농가인구는 2011년 2.55명에서 2012년 2.52명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 2.40명, 2022년 2.27명으로 전망된다.

<표2-3> 농가호수 전망

	단위	2005	2011	2012 (추정)	2017	2022	연평균 변화율(%)		
							12/11	17/12	22/17
농가호수	천 호	1,273	1,163	1,151	1,092	1,023	-1.1	-1.0	-1.3
농가호수 당 농가인구	명	2.70	2.55	2.52	2.40	2.27	-1.1	-1.0	-1.1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 & KAP(Korea Agricultural Population model)

3. 농림어업 취업자수

2012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분기 11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만 명에서 2.6%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2011년 전산업 취업자 수 중 농림어업은 6.4%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2년 1/4분기에는 1.2%로 비중이 감소하였다.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농가인구 감소와 더불어 2012년 150만 명에서 2017년 136만 명, 2022년 122만 명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2-4> 농림어업 취업자 수 동향

(천 명)

	2011				2012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전산업	23,459	24,572	24,483	24,462	23,927
농림어업	1,207	1,736	1,704	1,521	1,176
광공업	4,163	4,143	4,054	4,072	4,05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8,090	18,693	18,726	18,870	18,700

자료: 통계청

<표2-5> 농림어업 취업자 전망

	단위	2005	2011	2012 (추정)	2017	2022	연평균 변화율(%)		
							12/11	17/12	22/17
농림어업 취업자	천 명	1,813	1,542	1,497	1,355	1,215	-2.9	-2.0	-2.2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 & KAP(Korea Agricultural Population model)

제3절 고령화와 노후준비 방법

1. 인구고령화와 부양의식 변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2011)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1960년 73만 명(총인구의 2.9%)이던 것이 2010년에 545만 명(11%)을 거쳐, 2030년 1,269만 명(24.3%), 2060년에 1,762만 명(40.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령자의 비율은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에 들어섰으며, 2018년(14.3%)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20.8%)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세계적 추세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령 인구 비율이 7%(고령화사회)에서 14%(고령사회)까지 걸리는 기간이 18년이며, 14%에서 20%(초고령사회)까지는 불과 8년밖에 걸리지 않아 선진국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37.4%에 달해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표2-6).

<표2-6> 주요 연령계층별 인구 비율

단위 : %

	1970	1990	2000	2012	2020	2030	2040	2050
총인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	42.5	25.6	21.1	15.1	13.2	12.6	11.2	9.9
15~64	54.4	69.3	71.7	73.1	71.1	63.1	56.5	52.7
65세이상	3.1	5.1	7.2	11.8	15.7	24.3	32.3	37.4
65~74세	2.3	3.5	4.9	7.1	9.0	14.6	15.8	15.3
75~84세								
(75세이상)	(0.8)	(1.6)	2.0	3.8	5.1	7.2	12.4	14.4
85세 이상	-	-	0.4	0.9	1.6	2.5	4.1	7.7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가운데, 농촌지역의 인구 고령화는 도시지역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2012년 현재 전남의 고령인구 비율은 20.9%⁹⁾이며, 경북, 전북, 강원, 충남 등도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고령인구 비율을 시·군별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10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고령사회)를 넘는 시·군구는 230개 시·군구 중 82개(35.7%)에 달한다.

9) 전남지역의 2010년 고령인구 비율은 20.4%였다.

<표2-7> 시도별 고령인구 및 고령가구 비율 (2012)

단위 : %

고령인구				고령가구(가구주 기준)			
상 위		하 위		상 위		하 위	
시도	비율	시도	비율	시도	비율	시도	비율
전남	20.9	울산	7.4	전남	34.4	울산	12.0
경북	17.0	인천	9.3	전북	27.8	경기	14.1
전북	17.0	대전	9.3	경북	26.7	대전	14.1
강원	16.0	경기	9.3	강원	24.4	인천	14.6
충남	15.6	광주	9.7	충남	24.3	광주	16.0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12, 「시도별 장래가구추계」 2012

인구 고령화는 저출산 추세와 맞물려 노인 부양에 대한 세대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노년부양비는 1990년에 7.4이던 것이 2012년에는 16.1로 2배를 넘었으며, 2050년에는 71.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표2-8). 1990년에는 유소년인구 100명 당 고령인구는 20명꼴이던 것이 2017년에는 고령인구가 더 많아지고, 이후 고령자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2-8>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단위 : 해당인구 100명당 명, 명

	1990	2000	2012	2017	2030	2040	2050
노년부양비1)	7.4	10.1	16.1	19.2	38.6	57.2	71.0
노령화지수2)	20.0	34.3	77.9	104.1	193.0	288.6	376.1
노인1명당 생산가능인구(명)3)	13.5	9.9	6.2	5.2	2.6	1.7	1.4

주: 1)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2)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3)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대가족제도는 해체되고 핵가족화 분산가족화되어 가족의 전통적인 노인부양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특히 농촌 고령자의 경우 자녀들이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게 됨으로써 의지와는 달리 실질적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오희장·조덕호, 2009). 더구나 몇 명 안 되는 자녀마저 일자리를 찾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결혼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꾸리기에 도 빠듯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어렵다.

부모 부양에 대한 고령자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부모를 전적으로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가족과 정부, 사회가 공동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즉, 고령자인 부모에 대한 부양 문제가 이미 가족문제를 넘어 국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2-9>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65세 이상)

단위 : %

	계	부모 스스로 해결	가족	가족과 정부,사회	정부,사회	기타
2006	100.0	13.7	67.3	14.9	4.0	0.1
2008	100.0	16.5	48.1	29.9	5.5	0.0
2010	100.0	18.4	38.3	37.8	5.5	0.1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이미 고령자의 절반 정도는 생활비를 본인 스스로 마련하고 있으며, 자녀나 친척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고령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표 2-10). 본인이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우 근로나 사업을 통해 소득을 확보하는 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연금과 퇴직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상당수의 농업인들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청·장년 농업인의 경우 자신의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하겠다는 미련을 버리고 스스로

미리부터 준비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2-10>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방법 (65세 이상)

단위 : %

	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정부및 사회 단체	기 타
			소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연금, 퇴직금	예 금			
2005	100.0	49.3	100.0	61.8	14.2	15.3	8.6	44.7	5.7	0.3
2007	100.0	52.3	100.0	59.9	13.5	17.7	8.9	42.1	5.5	0.1
2009	100.0	51.9	100.0	49.7	15.9	27.3	7.1	37.6	10.4	0.0
2011	100.0	51.6	100.0	25.4	14.4	30.4	9.4	39.2	9.1	0.1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노후 준비는 장기간을 필요로 한다. 나이가 많이 들어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다. 당장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기 어렵고 자녀교육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긴 안목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미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고, 국민연금도 2008년부터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나오기 시작한다. 공적 연금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수록 노후 준비 여부에 따라 노후의 소득격차는 더 심화될 것이다.

2. 노후준비 방법¹⁰⁾

가. 생애주기와 소득 및 지출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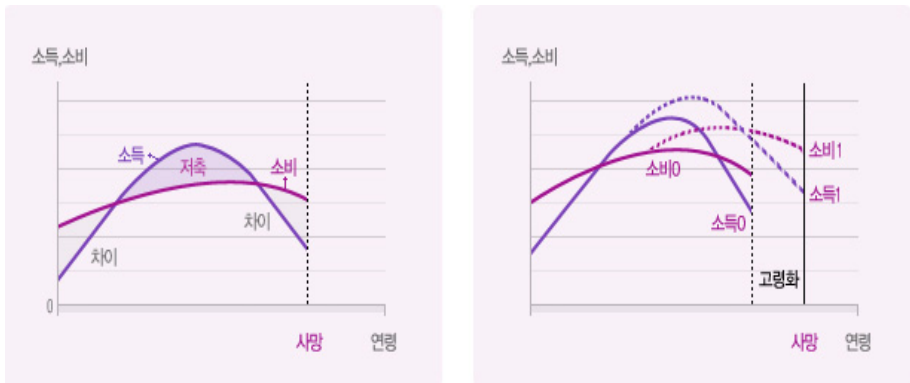
개인마다 구체적인 삶의 내용은 다르지만, 누구나 ‘출생 - 성장 - 결혼 - 육아(교육·출가) - 노후’ 라는 생애주기(life cycle)를 거쳐 일생을

10) 최경환 등(2007)에서 요약정리하였다.

마감하게 된다. 일생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소득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일생 동안의 소득 획득과 소비 수준은 생애 주기에 따라 다르다. 어려서는 소득보다는 소비가 많다. 성장하면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장년 시기는 일생동안 가장 활발한 소득활동을 하는 기간으로 어린 시절의 소비와 은퇴 후의 소비까지 충족할 소득을 확보하는 시기이다. 이후에는 소득이 점차 감소하고 소비도 감소하지만, 소득 감소가 더 커서 소비가 소득을 넘어서는 시기이다. 즉, 이론적으로는 일생의 소득 수준과 소비 수준이 일치하는 것으로 이른바 생애주기설이다.

이러한 생애주기설에 따른 개인의 소득과 소비는 평균수명의 연장, 즉 고령화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2-2>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 및 지출의 변화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으며, 왼쪽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 그만큼 노후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청장년기에 소득이 추가적으로 더 확보되어야만 한다<그림 2-2의 오른쪽 그림>.

<그림 2-2> 생애주기설에 따른 개인의 소득 및 소비지출의 변화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

여기서 간과해서 안되는 것은 노후의 소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노후가 되기 이전에 미리 필요한 소득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후 소득대책의 핵심은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얻을 수 있는 고정 수입원을 사전에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수록 국민연금 등에 의한 노후 소득준비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이다.

나. 고령화 리스크와 대응수단

1) 고령화 리스크의 유형 및 특징

고령화로 인해 당면할 수 있는 위험의 유형으로는 일반적으로 생존리스크, 건강리스크, 자산리스크, 재무리스크 및 재정리스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형별 특징은 <표2-11>과 같다.¹¹⁾

<표 2-11> 고령화 리스크의 유형과 특징

부문	리스크 유형	특 징
개인	생존리스크	사망률(mortality)의 안정적 예측은 가능하나, 물가 및 금리 등 거시적 변수와 근로기간에 종속적
	건강리스크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비용 증가와 의료서비스 공급과 수요의 모럴해저드에 취약 → 수술 및 치료 등 생존위험률(morbidity)의 장기예측 어려움
	자산리스크	물가, 금리 및 부동산가격 등 거시지표의 장기변동, 개인의 투자성향 및 금융지식 등에 영향
기업	재무리스크	정부정책에 종속적, 사회보험의 부담률
정부	재정리스크	정책적 선택에 영향(세대 간 부담 전가,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 미흡 등) → 정치적 리스크에 취약 고령화 리스크의 최후 대부자 역할(last resort)

¹¹⁾ 오영수 등(2006)

생존리스크는 개인이 예상했던 기대수명보다 오래 생존하게 되어 노후를 위한 수입이 부족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리스크를 말한다. 건강관리 수준 제고,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수명은 급격히 연장되고 있는데, 사회제도적으로는 근로기간이 오히려 짧아지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장수가 ‘재앙’이 될 수 있는 생존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다.

건강리스크는 고연령이 됨에 따라 신체적 및 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타인 의존상태에 있게 되는 리스크를 말한다. 건강리스크는 궁극적으로는 질병의 치료 및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의 크기로 나타나게 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암 발병 확률, 수술률 등이 높아지고 평균 입원일수도 증가하게 된다. 물론 과거에 비해 동일한 연령의 고령자의 건강상태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수명 연장에 따른 은퇴 이후 소요되는 의료비용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건강리스크는 증가되고 있다.

자산리스크는 개인이 축적한 자산이 경기 침체, 금리변동, 물가, 투자 실패 등의 요인에 의해 손실을 입게 되는 리스크를 말한다. 향후 개인들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저축, 투자 등을 늘려감에 따라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의 규모가 커질 것이다. 자산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할 경우 각종 거시경제적 요인 등에 의해 손실을 입음으로써 노후소득이 안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재무리스크는 기업이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납부를 위해 안게 되는 재무상의 부담으로 인한 리스크를 말한다. 또한 기업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고령화로 재정에 의한 사회보장지출이 확대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남으로써 이익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재정리스크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 특수직역연금 등의 운영을 위해 지출하는 재정부담으로 인한 리스크를 말한다. 정부는 조세 및 재정 수단을 동원하여 고령화 리스크에 대한 최후의 대부자 역

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재정의 크기는 조세 등 세입의 크기에 의해 한계가 지워지며,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정부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세제지원을 확대하게 되면 재정리스크가 확대된다.

이와 같이 개인이 직면하는 고령화 리스크는 생존리스크, 건강리스크, 자산리스크 등으로 다양하다.

2) 고령화 리스크의 대응수단

개인이 고령화 리스크에 대응하는 수단으로는 <표2-12>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으며, 정부, 사회, 시장 등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구체적 수단은 달라진다. 생존리스크 대응수단은 생계급여,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역모기지론 등이 있다. 건강리스크 대응수단으로는 의료보호,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민간 건강보험 및 장기간병보험 등이 있다. 자산리스크 대응수단은 PB, WA, FP 등이 있다.

<표 2-12> 개인의 고령화 리스크 유형별 대응수단

리스크 유형	대 응 수 단		
	정부재정	사회보험	민간금융·보험
생존리스크	생계급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일시납 즉시연금, 역모기지
건강리스크	의료보호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민간건강보험, MSA1) 민간장기간병보험
자산리스크	-	-	PB2), WA3), FP4)

주: 1) MSA(Medical Saving Account)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음.

2) PB = Private Ban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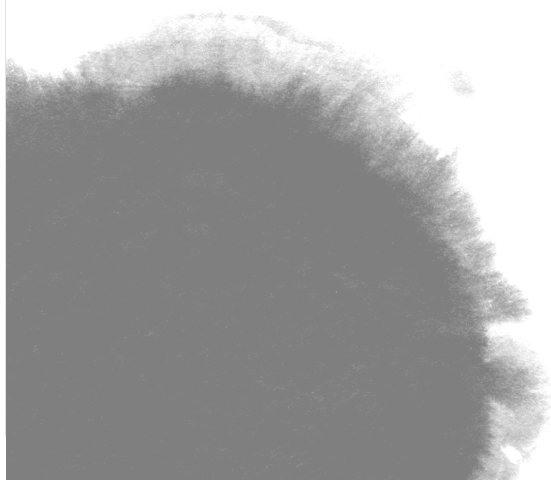
3) WA = Wrap Account

4) FP = Financial Planning

자료: 오영수 등(2006)

3장

한국의 공적 노후보장대책의 실태와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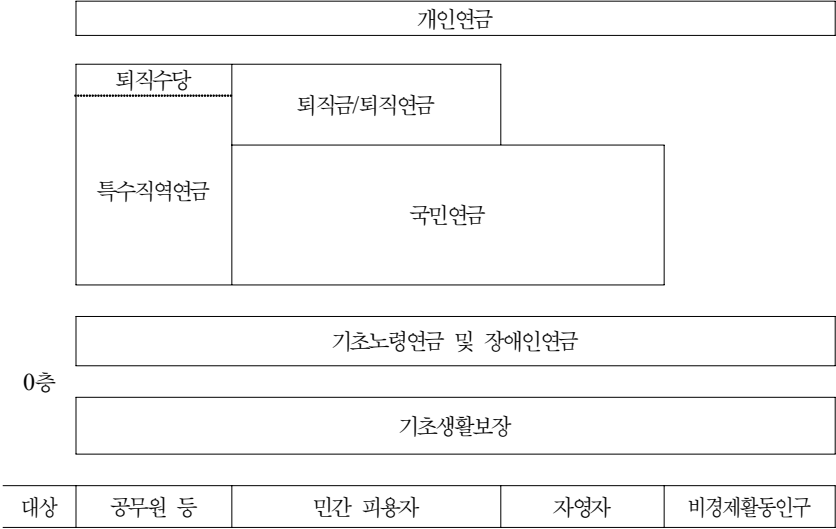
제3장 한국의 공적 노후보장대책의 실태와 문제점

제1 절 소득보장정책

누구나 본인과 가족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본인과 가족의 경제행위를 통해 소득(근로, 사업, 금융 소득 등)을 확보하여 충당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에 비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소득보장은 불의의 또는 긴박한 위기 상황, 나아가 불확실한 미래에서도 생활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놓여준 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는 긴급지원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경영이양직접지불제, 국민연금 등이 있다.

<그림3-1> 현행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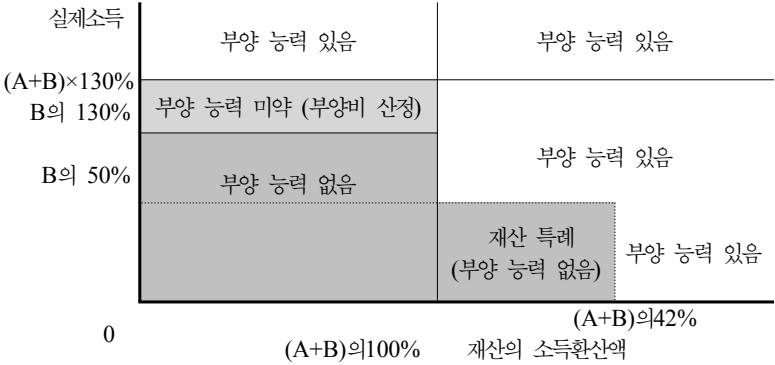


자료: 이용하. 2011.1.2 “다층연금체계 구축: 내실화 방안을 중심으로”. 「연금연구」 제1권 제2호 한국연금학회.

1. 긴급지원제도

긴급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자가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200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내용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연료비(동절기)·해산비·장제비 지원 및 관련 민간 기관·단체 연계 지원 등이 있다. 지원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생계지원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이 가능하다. 긴급지원제도는 농촌지역에서는 생계비 지원보다는 의료비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림3-2>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일반/재산특례)



주: A: 수급권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B: 부양 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자료: 보건복지부.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의료급여가 있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 수준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금형태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및 타 법에서 지원되는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이 해당하며,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데, 근로능력자가구는 의료급여 2종, 근로무능력자가구는 의료급여 1종을 받는다. 교육급여는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하며, 해산급여는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며,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한다. 자활급여는 수급자 선정 조건(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에는 부합하나 근로능력이 있어 스스로 생계유지를 해야 하는 사람중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시장과 경쟁할 수 없는 경우 자활지원센터의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일하는 조건으로 지급한다. 생계급여의 경우 가구별 급여 수준은 최저생계비에서 가

구의 소득인정액과 여타의 지원액과 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가구별 급여액 결정>

- 급여액 = 최저 생계비 - 가구의 소득인정액 - 타 급여액 - 타법령지원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농어촌지역의 경우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 등 농어촌지역에 새롭게 대두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업인가구에 대하여 수급자 선정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농어업인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농어업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을 추가 인정
 - ①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1ha 미만 소유한 자(임차한 자)가 지급받은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및 논농업소득보조금
 - ② 농어업인가구가 부담한 보육료중 15만원 이내의 금액
 - ③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액중 이자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농어업인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
 - ①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중 직접 생산에 소요되고 있는 농지의 가액과 가축·종묘·농기계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 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차감

2011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8만 명 중 고령자의 비중은 27.4%이다. 한편, 2011년 현재 고령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6.7%이며, 여자 수급률(8.2%)이 남자(4.5%)보다 높다.

<표3-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5세 이상)

단위 : 명, %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65세이상 수급자	구성비1)	수급률2)	남자		여자	
					수급률		수급률	
2008	1,444,010	382,050	26.5	7.6	100,772	4.9	281,278	9.4
2009	1,482,719	387,847	26.2	7.4	104,014	4.9	283,833	9.1
2010	1,458,198	391,214	26.8	7.2	106,723	4.8	284,491	8.8
2011	1,379,865	378,411	27.4	6.7	104,901	4.5	273,510	8.2

주 : 1) (65세 이상 수급자 / 총수급자) × 100

2) (65세 이상 수급자 / 65세이상 추계인구) × 100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년도

출처: 통계청. 2012 고령자통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소득계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농어촌지역 측면에서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농어촌은 빈곤인구율에 비하여 수급인구율이 낮다.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빈곤인구율 대비 수급인구 비율은 대도시 93.5%, 중소도시 66.3%인데 비해 농어촌은 48.6%로 농어촌의 수급비율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3-2).

<표3-2> 지역별 빈곤인구율과 수급률 비율

단위: %

	빈곤인구율(A)	수급인구율(B)	비율(B/A*100)
대도시	6.6	6.2	93.5
중소도시	6.8	4.4	65.3
농어촌	14.8	7.2	48.6
전 국	7.4	5.5	74.1

자료: KOWEPS(한국복지패널데이터) 2차 원자료

출처: 문진영·김미곤·여유진(2008)

둘째, 보유 농지에 대해 농업소득을 적용하면서 재산으로도 환산하여 농지가 이중 계상되고 있다.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으나 금융재산은 기초공제가 있는 반면 농업소득은 기초공제가 없다. 셋째, 농가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농업인 특례가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직불금이 제한적이다. 현재는 2개의 직불금(쌀고정직불금, 친환경직불금)만 인정되고 있다. 넷째, 부양의무자의 범위 및 부양능력 판정이 엄격하여 실제로 극빈층이면서도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고령농이 많은 농어촌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인구가 약 182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헌수 2012, p.139). 이외에 제도의 기본적인 문제점으로 탈 빈곤 유인이 약하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을 ‘근로 무능력자의 보호’로 설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빈곤층은 고용(근로)을 통한 자립과 복지 증진을 추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¹²⁾

12) 윤희숙. 2012.6.12. “‘고용을 통한 복지실현’을 위한 공공부조 재편 방향”. KDI FOCUS 제18호

3)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이전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던 경로연금과 교통수당 등을 연금형태로 체계화한 것으로서 2008년 1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70세 이상 노인의 60%,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60%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9.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70%까지 확대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이 제도 시행으로 경로연금은 폐지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은 과거의 경로연금을 개선한 것이지만, 급여수준이 여전히 낮아 노인들의 노후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예산 확보와 관련되어 급여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노인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연금액 인상과 수혜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금지급액 수준을 높여 지원받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층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국민연금과의 역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3-3> 2012년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액과 상세 기준¹³⁾

구분		선정 기준액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보유한 경우	근로소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노인 단독	'11년	74만원	월 최대 114만원 이하	월 74만원 이하	3억 560만원 이하
	'12년	78만원	월 최대 121만원 이하	월 78만원 이하	3억 1,520만원 이하
노인 부부	'11년	118.4만원	월 최대 198.4만원 이하	월 118.4만원 이하	4억 1,216만원 이하
	'12년	124.8만원	월 최대 210.8만원 이하	월 124.8만원 이하	4억 2,752만원 이하

- 주: 1.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11년도 387만 명 → '12년도 402만 명
 2. 기초노령연금 월 지급액: '11.4~'12.3 91,200원 → '12.4~'13.3 94,600원
 3. 선정기준 관련 공제제도
 - 소득공제: 근로소득 43만 원
 - 재산공제
 · 일반재산공제: 대도시 1억 8백만 원, 중소도시 6천 8백만 원, 농어촌 5천 8백만 원
 · 금융자산공제: 가구당 2천만 원

자료: 보건복지부. 2012.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4) 국민연금

가) 목적

국민연금은 모든 경제활동 계층(18~60세)을 대상으로 하여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을 급여하는 제도이다.

나) 국민연금 추진 경과

1973년 국민연금복지법이 공포되었으나 오일쇼크로 연기되어 오다가

13) 보건복지부

1986년 국민연금법이 공포되고 1988년부터 국민연금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은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1995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어촌주민들은 2015년 이후부터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¹⁴⁾. 이에 비해 공무원연금은 196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그림3-3> 공적 연금별 연금 수급 개시 시기

연금별 \ 시기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공무원연금	1960	1980				
군인연금	1963	1983				
사학연금		1975	1995			
국민연금			1988	2008		
국민연금 (농어촌 확대)				1995	2015	

다) 연금보험료 납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표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¹⁵⁾을 곱한 금액을 매월 연금보험료로 납부한다.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본인이 50%를 납부하는데 비해,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한다.

$$\bigcirc \text{연금보험료} = \text{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times \text{연금보험료율}$$

14) 물론 가입기간이 10년만 넘으면 가입년수에 따른 감액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농어촌지역에서도 2005년부터 감액노령연금 수급자가 발생하고 있다.

15) 연금보험료율은 현재 9%이다.

라) 급여의 종류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노령 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이 초과하면 완전노령연금, 20년 미만이면 감액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20년을 기준으로 가입기간 초과 또는 미달한 기간(년)만큼 비례적으로 연금수급액이 증가 또는 감소된다.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과정에서 이미 60세까지 가입해도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노령계층에게 최소 5년 이상만 가입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노령연금이 한시적으로 실시된 바 있다. 농어업인의 경우 1995년 국민연금이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농어업인특례노령연금이 한시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당시 가입한 농어업인들은 2000년 7월부터 특례노령연금을 받고 있다¹⁶⁾.

마)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WTO체제 출범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어려워진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5년부터 농특세를 재원으로 농어업인의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①농어업인 지역가입자, ②농어업인 지역가입자에서 농어업인 지역임의지역가입자로 된 자, ③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후에 농어업인이 된 자가 해당된다¹⁷⁾. 지원내용은 지원기준 표준소득등

16) 당시 특례노령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이 많지 않았으며, 가입했던 농업인들 중 IMF 이후 가입을 취소한 농업인들이 많아 현재 특례노령연금을 받는 농업인은 매우 적다.

17) 이에 비해 농어업인이라고 하더라도 ① 농림어업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②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사업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간이과세자 및 농림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농어업인으로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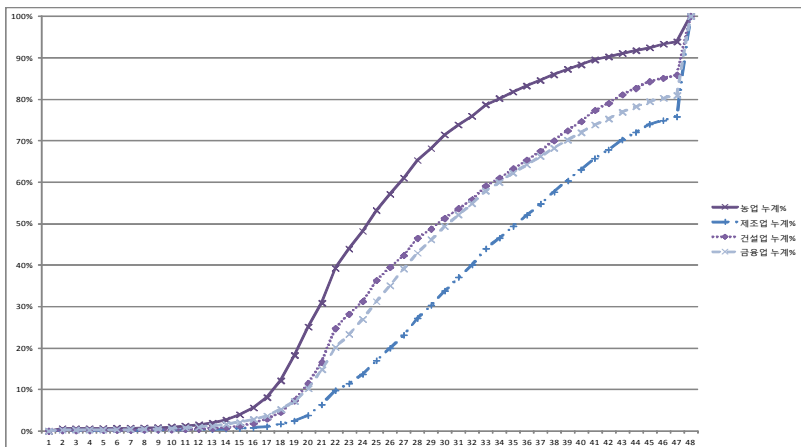
급 이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은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률로 지원하고 지원기준 표준소득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은 지원기준 표준소득등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바) 문제점

농어업인을 포함한 농어촌 주민 입장에서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농어촌지역의 경우 국민연금이 실시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 아직 농어촌지역에서의 노후소득원으로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농어촌지역에서의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2015년 이후부터이다. 현재는 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서 60세에 달한 경우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는 2005년부터 발생하고 있다.

둘째, 국민연금이 실시되고 있지만 많은 농업인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장차 노후 생활비 마련이 불안하다.

<그림3-4> 기준소득월액 구간별 업종별 가입자 분포(2011)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1국민연금통계연보」를 토대로 작성

셋째,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들은 대다수가 낮은 소득등급에 분포되어 있다. 낮은 소득등급에 가입하면 당장은 연금보험료를 적게 부담하지만, 그만큼 장차 수령할 연금액 규모가 작아져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대책으로서는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⁸⁾. 2011년말 현재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492,683명, 장애연금 4,927명, 유족연금 111,753명 등 총 609,363명으로 노령연금 수급액은 1인당 월 평균 191천 원인데, 전체노령연금 수급자가 받고 있는 월 평균 수급액(282천 원)의 68% 수준이다¹⁹⁾.

넷째, 농어업인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어업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²⁰⁾ 지원대상자가 제한적이다.

5) 경영이양직접지불제

경영이양직접지불제는 1996년까지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라는 명칭으로 실시되다가 1997년에 경영이양직접지불제로 개명되면서 고령은퇴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쌀전업농의 경영규모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이다. 경영이양직불금의 지급대상은 최근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그 기간중 1년 이상 벼를 경작한 63~69세 농업인이다. 그동안 경영이양직불제의 보조금 지급단가 수준이 위탁영농 시의 소득 수준보다 낮아 경영이양을 유도할 충분한 유인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2009년부터 내용이 많이 개선되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대상

18)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나 연금액이 적어 노후 빈곤에 노출될 계층이 이미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또다른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광범하게 형성되어 있다(원시연 2011).

19) 농림수산식품부. 2012.11.9. 보도자료(국민연금 농어업인 수급자 609천 명, 월수급액 191천 원).

20) 농어업인이라고 하더라도 ① 농림어업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②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사업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간이과세자 및 농림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농어업인으로 인정되어 지원이 가능하다.

농지가 진흥지역 내 논에서 논·밭·과수원까지 확대되고, 사업대상 연령도 65~70세까지로 확대되었다. 또한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할 경우 모두 매월 25만 원씩(ha당) 연금형태로 지급되며, 지급기간도 현행 70세에서 75세까지 연장된다. 따라서 65세에 경영이양을 하여 75세까지 10년간 경영이양직불금을 받게 되면 최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6) 농지연금

주택연금제도가 2007년부터 실시되었으나 주택가격이 현저히 낮은 농촌주택의 경우에는 담보가치가 없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유명무실하였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는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실정으로 고령농가의 46%가 연금 미수급 상태에 있다. 이에 농가고정자산 중 72%를 차지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연금상품이 개발되었다.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이다(김창기 2012).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고령 농업인 사망 시에 담보 농지를 처분하여 연금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이다.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 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며, 영농경력 5년이 이상이고, 소유농지 총면적이 3만m² 이하이어야 한다.

농지연금의 지급방식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종신행)과

일정기간 매월 지급받는 방식(기간형)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한다.

가입비는 가입 후 중도이탈 방지, 농지가격 하락·이자율 상승·수명 연장 등으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보전 목적으로 가입자에게서 징수한다. 가입비 규모는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2 이내에서 장관이 결정하며, 위험부담금 역시 농지연금채권의 연 100분의 2 이내에서 장관이 결정한다. 담보농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농지연금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표3-4>와 같다. 2012.7월말 현재 농지연금 가입자는 1,914명이며, 가입자 평균연령은 75세이다. 가입형태 별로 보면 기간형이 69%를 차지하며 종신행은 31%이다. 연금액 규모 별로 보면 월 연금액 50만 원 미만인 826건(43%)으로 가장 많고 200만 원 이상은 12% 정도이다.

<표3-4> 농지연금 가입자 현황

① 가입자 개요(누계)								
가입건수			평균월연금액(천 원)			평균연령(세)		
계	종신행	기간형	계	종신행	기간형	계	종신행	기간형
1,914	598	1,316	868	886	860	75	76	74

② 연금 가입형태별					
계	종신행	기간형			
		계	5년형	10년형	15년형
1,914건	568건	1,316건	494건	662건	160건
100%	31%	69%	26%	35%	8%

③ 연금액 규모별						
계	50만 원 미만	50~100	100~150	150~200	200~250	250만 원 이상
1,914건	826건	475건	250건	134건	79건	150건
100%	43%	25%	13%	7%	4%	8%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은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농지가격을 평가할 때 공시지가²¹⁾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정당한 농지가격을 평가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지역과 떨어져 있는 오지 지역의 농지는 공시지가가 낮아 고령농업인들이 노후소득대책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도시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역모기지는 실거래가(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농지는 주택에 비해 연금수령액이 적을 수 밖에 없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으며, 세제 혜택도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²²⁾ 주택연금은 근저당을 설정할 때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및 채권매입비가 면제되고 5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의 25%도 감면되는데 반해 농지연금은 농특세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할 뿐 별다른 세제 혜택이 없다. 둘째, 고령 농업인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농지를 상속받기를 바라고 있고, 고령 농업인도 자신의 노후생활이 궁핍하더라도 자녀에게 상속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고령자에 대한 가족의 부양의식은 약화되고, 분산거주하여 실질적으로 부양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려는 고령자의 유교적 가치관과 부양 여부와 관계 없이 재산 상속을 기대하는 자녀의 욕심이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통적 상속의식²³⁾이 농지연금이 확산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1) 농지평가 방법은 계약 시 농지의 가격을 적정하게 평가하는 방법과 약정 종료 시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매 낙찰 등을 감안하여 농지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는 공시지가만을 반영함으로써 인하여 농지평가율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김창기 2012, p.8).

22) 농민신문, 2012.10.17자(사설: 농지연금을 주택연금과 차별해야).

23) 오희장조덕희(2009)의 연구에 따르면, 농촌 고령자는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농경기간이 길수록 소유 부동산 규모가 클수록 자녀에 대한 노후의 경제적 지원의 기대 정도가 클수록 상속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p.105).

<표3-5>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운영방식 비교

	주택연금	농지연금
근거법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법
도입시기	- 2007년 7월	- 2011년 1월
신청자격	- 주택소유자로서 본인,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 - 부부기준 주택을 1채만 소유, 실제 거주 - 주택법상 주택으로 9억 원 이하 -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주택	- 농지소유자로서 본인, 배우자 모두 만 65세 이상 -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 총 소유농지가 3만 m ² 이상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써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비소구권 적용	- 차입자 채무는 주택가치로 제한 - 잔여 지분은 상속인에게 지급	- 차입자 채무는 농지가치로 제한 - 잔여 지분은 상속인에게 지급
주요 연금지급 방식	- 종신행(정액형, 증액형, 감액형): 월 지급금으로만 수령 - 혼합종신행: 대출한도 50%까지 개별이출 허용	- 종신행(정액형):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 기간형(정액형): 일정기간 동안 매월 지급
보증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대출기관	- 민간 금융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실제대출 금리	- 3개월 CD금리 + 1.1%(변동금리)	- 연 4%(고정금리)

주: 농지연금의 기간형(정액형) 상품의 대출 종료는 차입자가 사망하는 시점이므로 연금의 지급만료일 이후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은 차입자가 계속 가지게 되므로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자경에 활용할 수 있음.

자료: “류근옥마승렬(2012)

제2절 의료보장정책

의료보장은 국민 누구나 일생동안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서 농어촌의 경우 농어업인을 포함한 농어촌지역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경제적 접근성), 인근 대도시까지 가지 않고 기초 생활권내에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물리적 접근성).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농업인재해공제 등이며,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

가) 목적

국민건강보험은 질병·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 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1977.7월 5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입된 의료보험은 1988.7월 도시지역까지 확대되어 전국민 의료보험시대가 시작되었다.

나) 보험료 부과체계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과악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재산, 세대원의 성 및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한 것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그림 3-5). 부과요소에는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세대원의 성·연령이 포함됨. 그러나 과세소득²⁴⁾ 500만 원을 기준으로 부과요소가 달리 적용된다. 과세소득 501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한 각각의 부과점수가 적용된다. 그렇지만 과세소득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과악이 어렵기 때문에 평가소득이 적용되는데, 이를 산출하기 위하여 세대원수 및 세대원의 성별 및 연령과 아울러, 재산, 자동차, 과세소득 등이 기준으로 다시 사용된다. 이러한 보험료 산출방식으로 인해 과세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24) 과세소득은 실제소득에서 필요비용을 제외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필요비용 인정율은 소득유형별로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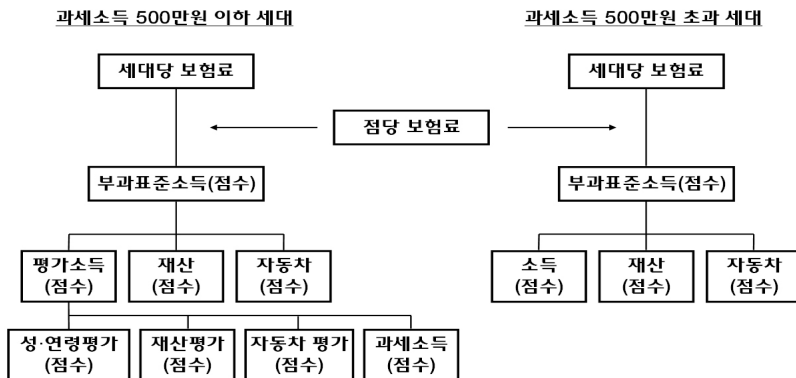
농업인의 경우 생산수단인 농지가 이중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 국민건강보험료의 농어촌·농어업인 경감 지원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건강보험료의 1/2씩 분담하는데 비해,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농어업인은 지역가입자이므로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어가 경제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 주민 및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농어촌주민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고 있다.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은 농어촌경감과 농어업인 경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어촌 경감²⁵⁾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의 22%를 경감하고 있으며, 농어업인 경감²⁶⁾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거주자 중 농어업인에 대하여 추가로 28%를 경감하고 있다.

<그림3-5>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방식



25) 보건복지가족부가 관장한다.

26)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방식 소득금액 500만 원을 기준으로 부과요소를 달리 적용		
부과등급 구분	산정방법(점수 합산)	보험료 결정
① 소득등급별점수(70등급)	· 소득 500만원 이하 (② + ③ + ④)	부과요소별 점수(합산) × 점수당 금액 ²⁷⁾
② 재산등급별점수(50등급)		
③ 자동차등급별점수 (7등급, 28구간)		
④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점수(30등급)	· 소득 501만원 이상 (① + ② + ③)	↓ 보험료

지원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제57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제27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법률(제13조)에 두고 있다.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은 군 및 동농 복합시의 읍·면 지역 거주 및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읍·면 지역의 거주세대 중 500만 원 이상 세대가 농어업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준농어촌지역 거주 세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보존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 농어업인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가입자가 있는 세대이다. 전수조사 누락자는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여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을 확인하여 경감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농어업인 경감은 당해연도 내에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27) 매년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을 반영하여 변경된다.

라) 문제점

국민건강보험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첫째, 농어업인의 경우 소득과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득 이외에 재산과 세대원의 성·연령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동일 요소(예: 농지)가 중복 적용되고 있다. 둘째, 경감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므로써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이 지원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셋째, 농업 관련 법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농업인이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하여 가정에서의 돌봄이 어렵고 비용도 과중하므로 노인의 간병 및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2005년도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7.1부터 실시되고 있다.

장기요양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이다. 본인 또는 본인을 대신하는 신청자가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의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하는 등급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게 된다.

보험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물급여로 나누어지는데, 내용은 <표3-6>과 같다.

재원조달방법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지원 및 본인일부부담으로 구성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에 일정비율²⁸⁾을 부과함으로써

28) 2008년 현재 4.05%이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누구나 부담하고 있다. 한편, 국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하며, 장기요양을 이용하는 자들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이용자의 부담비율은 시설급여의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소득·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저소득층²⁹⁾은 각각 1/2로 경감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은 무료이다.

<표3-6>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내용

종류	내용	운영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가사지원 등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의 도움 · 주·야간 보호시설
시설급여	· 노인 요양시설 장기간 입소	· 노인 요양시설
특별현금급여	· 요양시설이 없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가족 등을부터 요양받는 급여	· 가족 등이 보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일부 농어촌지역 노인들은 본인부담이 과중하여 이용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담당자들은 매월 30~40만원의 본인부담금³⁰⁾은 농어촌노인들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경감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둘째,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 요양시설이 없는 것도 농어촌 노인들이 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하지 못하는 또다른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경우 대상자가 적고 산

29)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해당된다.

30) 요양서비스와 관련되는 비용은 일부(15~20%)를 부담하면 되지만, 식비 등 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재해 있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시설보호보다는 찾아가는 서비스 (재가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3. 농업인재해공제제도

농업인재해공제는 농업인이 농작업과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당하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공제제도로써 1996년부터 농협이 시행하고 있다. 농업인재해공제는 사업장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나 보장내용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농업인재해공제는 농업인안전공제와 농기계종합공제로 구분되는데, 농업인안전공제는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15~84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 등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며, 농기계종합공제는 농기계 파손 및 고장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정부는 농업인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³¹⁾에게 공제료의 50%를 보조지원하고 있다.

급여내용 중 사망위로금에 대해 살펴 보면, 2007년에 3,500만 원이던 사망위로금을 2008년에는 4,50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6,000만 원³²⁾까지 인상되었다. 또한 2009년부터는 농작업을 하다가 일 사병으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상금을 1,0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임업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농업인재해공제는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산재보험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³³⁾. 산재보험

31) 2007년부터 임업인도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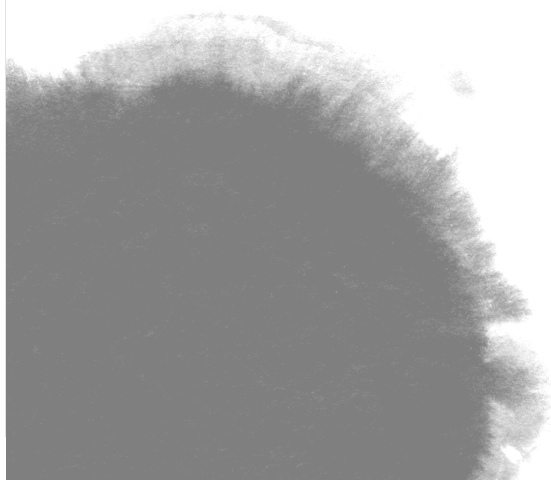
32) 산재보험의 사망보상금은 9천만 원이며, 사망위로금 인상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증가한다.

33) 농업인들은 보장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여 농업인의 산재보험이 되도록 농업인 재해 보상보험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18대 국회에서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었으나 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폐기되었다. 이후 제18대 대선 과정에서 두 대선 후보 모두가 이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보다 보장수준이 낮고, 휴업급여 등 소득보장 수단이 없으며, 정부 예산액에 따라 가입률(가입대상)이 제한적이다.

4장

농업인의 노후준비 실태



제4장 농업인의 노후준비 실태

제1 절 설문조사 응답 농업인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 응답 농업인의 일반적 특성은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가 882명(82.7%), 여자가 185명(17.3%)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52명(5.0%), 40대가 180명(17.2%), 50대가 506명(48.2%), 60대가 311명(29.6%)로 나타나 50대가 가장 많았다.

학력(중퇴 포함)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80명(7.6%), 중학교 졸업이 193명(18.2%), 고등학교 졸업이 468명(44.2%), 대학교 졸업 이상이 318명(30.0%)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를 살펴보면, ‘배우자 있음’이 983명(95.2%), 미혼이 22명(2.1%) 등이었다.

‘부모 부양 유무’는 ‘전적으로 부양’이 329명(35.4%)이 가장 많고, ‘전혀 부양하지 않음’이 314명(33.8%), ‘부분적으로 부양’이 189명(20.3%), ‘가끔 용돈만 제공’이 98명(10.5%)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을 살펴보면, ‘부부 + 자녀(미혼)’이 423명(39.9%)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부모 + 부부 + 자녀’가 300명(28.3%), ‘부부’가 188명(17.7%) 순이었다.

‘부채 유무’를 살펴보면, 응답 가구의 84.7%가 부채가 있음. ‘농가 유

형'은 전업농이 715명(67.6%), 1종 겸업농이 207명(19.6%), 2종 겸업농이 135명(12.8%) 이었다.

가구당 농업소득(2011년)을 살펴보면, '1,000만원 이하'가 24.8%, '1,001만원~2,000만원'이 21.6%, '2,001만원~3,000만원'이 17.7%, '3,001만원~5,000만원'이 19.2%, '5,000만원 이상'이 16.7%로 나타났다.

<표 4-1> 설문조사 응답 농업인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사 례 수	비율
성별	남자	882	82.7
	여자	185	17.3
연 령	30대 이하	52	5.0
	40대	180	17.2
	50대	506	48.2
	60대	311	29.6
학 력	초졸 이하	80	7.6
	중졸	193	18.2
	고졸	468	44.2
	대졸 이상	318	30.0
결혼 상태	배우자 있음	983	95.2
	미혼	22	2.1
	사별	11	1.1
	이혼	14	1.4
	별거	3	0.3
부모 부양 유무	전적으로 부양	329	35.4
	부분적으로 부양	189	20.3
	가끔 용돈만 제공	98	10.5
	전혀 부양하지 않음	314	33.8
가족 구성	부부	188	17.7
	부부 + 자녀(미혼)	423	39.9
	부부 + 자녀(기혼)	45	4.2
	부부 + 자녀(기혼) + 손자녀	45	4.2
	부모 + 부부 + 자녀	300	28.3
	부부 + 자녀(미혼) + 손자녀	16	1.5
	조부모 + 부부 + 자녀	15	1.4
	본인 혼자 살고 있음	21	1.9

	기타	7	0.7
부채 유무	있다	899	84.7
	없다	163	15.3
농가 유형	전업농	715	67.6
	1종 겸업농	207	19.6
	2종 겸업농	135	12.8
농업소득	1,000만원 이하	250	24.8
	1,001만원~2,000만원	218	21.6
	2,001만원~3,000만원	179	17.7
	3,001만원~5,000만원	194	19.2
	5,001만원 이상	168	16.7

제2절 농업인의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가입 실태

1. 국민연금 가입 실태

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관련

설문조사 응답자(1,023명) 중에서 572명(55.9%)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표 4-2 참조). 59세 이하 응답자(707명) 중에서는 516명(73.0%)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60세~65세 응답자(292명) 중에서는 42명(14.4%)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60세 이상 응답자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은 ‘임의계속 가입’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4-2>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여부

응답범주	빈도	비율(%)
예	572	55.9
아니오	451	44.1
계	1,023	100.0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서’가 41.4%,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가 17.3%, ‘이미 공적 연금을 받고 있어서’가 13.9%, ‘국민연금을 믿을 수 없어서’가 8.2% 순으로 나타났다(표 4-3 참조).

<표 4-3>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

응답범주	빈도	비율(%)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서	182	41.4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76	17.3
이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받고 있어서	61	13.9
국민연금을 믿을 수 없어서	36	8.2
별다른 이유 없다	29	6.6
다른 것으로 충분히 노후준비를 하고 있어서	19	4.3
기타	37	8.5
계	440	100.0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월)는 ‘30,000원 이하’가 9.49%, ‘30,001원~50,000원’이 24.3%, ‘50,001원~70,000원’이 26.0%, ‘70,001원~100,000원’이 26.0%, ‘100,001원~150,000원’이 11.7%, ‘150,001원 이상’이 7.9% 이었다. 평균 보험료는 81,576원이었고, 현재 농업인 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 상한 기준 보험료인 ‘71,100원 이하’는 55.3%이었다(표 4-4 참조).

<표 4-4>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월)

응답범주	빈도	비율(%)
30,000원 이하	50	9.49
30,001원~50,000원	129	24.3
50,001원~70,000원	109	20.6
70,001원~100,000원	138	26.0
100,001원~150,000원	62	11.7
150,001원 이상	42	7.9
계	530	100.0

* 평균: 81,576원

현재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는 지 질문한 결과 ‘부담이 된다’(‘약간 부담이 된다’ 및 ‘매우 부담이 된다’)가 36.6%이고, ‘부담이 안 된다’(‘별로 부담이 안 된다’ 및 ‘전혀 부담이 안 된다’)가 32.5%로 나타나 ‘부담이 된다’는 응답자가 ‘부담이 안 된다’는 응답자보다 다소 많음을 알 수 있다(표 4-5 참조).

<표 4-5>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담 정도

응답범주	빈도	비율(%)
매우 부담 된다	29	5.2
약간 부담 된다	176	31.4
적정하다	174	31.0
별로 부담 안 된다	143	25.5
전혀 부담 안 된다	39	7.0
계	561	100.0

‘장차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재 납부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납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의 32.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표 4-6 참조).

<표 4-6> 국민연금 보험료의 추가 납부 의향

응답범주	빈도	비율(%)
그렇다	185	32.6
아니다	313	55.2
모르겠다	69	12.2
계	567	100.0

나.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실태

농업인 배우자의 42.9%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표 4-7 참조).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농업인 배우자의 39.2%는 향후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8 참조). ‘앞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면 선생님의 배우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있다’가 70.9%, ‘없다’가 17.9%, ‘모르겠다’가 11.1%로 나타났다(표 4-9 참조).

<표 4-7>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

응답범주	빈도	비율(%)
그렇다	426	42.9
아니다	568	57.1
계	994	100.0

<표 4-8>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의향

응답범주	빈도	비율(%)
있다	212	39.2
없다	242	44.7
모르겠다	87	16.1
계	541	100.0

<표 4-9> 국가의 연금보험료 지원 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의향

응답범주	빈도	비율(%)
있다	376	70.9
없다	95	17.9
모르겠다	59	11.1
계	530	100.0

농업인 배우자의 국민연금 월 보험료는 ‘30,000원 이하’가 9.9%, ‘30,001원~50,000원’이 24.3%, ‘50,001원~70,000원’이 19.5%, ‘70,001원~100,000원’이 26.1%, ‘100,001원~150,000원’이 11.7%, ‘150,001원 이상’이 8.5%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업인 배우자의 국민연금 월 평균 보험료는 81,109원이었고, 현재 농업인 보험료에 대한 국고 지원 상한 기준 보험료인 ‘71,100원 이하’는 58.2%이었다(표 4-10 참조).

<표 4-10> 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월)

응답범주	빈도	비율(%)
30,000원 이하	49	9.9
30,001원~50,000원	120	24.3
50,001원~70,000원	96	19.5
70,001원~100,000원	129	26.1
100,001원~150,000원	58	11.7
150,001원 이상	42	8.5
계	328	100.0

* 평균: 81,109원

현재 납부하고 있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는 지 질문한 결과 ‘부담이 된다’(‘약간 부담이 된다’ 및 ‘매우 부담이 된다’)가 40.6%이고, ‘부담이 안 된다’(‘별로 부담이 안 된다’ 및 ‘전혀 부담이 안 된다’)가 32.5%로 나타나 ‘부담이 된다’는 응답자가 ‘부담이 안 된다’는 응답자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표 4-11 참조).

<표 4-11> 배우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담 정도

응답범주	빈도	비율(%)
매우 부담 된다	26	7.0
약간 부담 된다	125	33.6
적정하다	100	26.9
별로 부담 안 된다	87	23.4
전혀 부담 안 된다	34	9.1
계	372	100.0

다.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지원제도 인지 정도

‘선생님은 현재 농업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잘 알고 있다’가 74.7%, ‘들은 적은 있다’가 15.6%, ‘전혀 모른다’가 9.6%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1/4 정도는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지원제도’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다(표 4-12 참조).

<표 4-12>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지원제도 인지 정도

응답범주	빈도	비율(%)
잘 알고 있다	746	74.7
들은 적은 있다	156	15.6
전혀 모른다	96	9.6
계	998	100.0

라.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예상 수령액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최근에 통보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생님이 앞으로 받으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31만원~50만원’이 44.7%로 가장 많았고, ‘30만원 이하’가 27.5%, ‘51만원~70만원’이 17.9% 순이었다. 그리고 평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월)은 46만원이었다(표 4-13 참조).

<표 4-13>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월)

응답범주	빈도	비율(%)
30만원 이하	114	27.5
31만원~50만원	185	44.7
51만원~70만원	74	17.9
71만원~100만원	27	6.5
101만원 이상	14	3.4
계	414	100.0

* 평균: 46만원

2. 개인연금 가입 실태

‘선생님 택은 개인연금을 몇 개 가입하고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가입하지 않음’이 49.0%, ‘1개 가입’이 27.7%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연금을 ‘2개 이상 가입’한 경우는 23.4%로 나타났다. (표 4-14 참조).

<표 4-14> 개인연금 가입 실태

응답범주	빈도	비율(%)
가입하지 않음	495	49.0
1개	280	27.7
2개	176	17.4
3개	40	4.0
4개	14	1.4
5개 이상	6	0.6
계	1,011	100.0

‘선생님이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가 56.8%,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가 15.3%, ‘개인연금이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14.6% 순으로 나타났다(표 4-15 참조).

‘선생님은 앞으로 개인연금을 가입할 생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현재 개인연금에 1개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만)의 27.0%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표 4-16 참조).

<표 4-15> 개인연금 미 가입 이유

응답범주	빈도	비율(%)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260	56.8
개인연금이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67	14.6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70	15.3
다른 준비만으로도 노후대책이 충분하므로	36	7.9
기타	25	5.5
계	458	100.0

<표 4-16> 향후 개인연금 가입의사

응답범주	빈도	비율(%)
그렇다	129	27.0
아니다	348	73.0
계	477	100.0

제3절 농업인의 건강관리 실태

1. 건강 상태

‘선생님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나쁘다’(‘매우 나쁘다’와 ‘나쁜 편이다’)가 15.%, ‘건강하다’(‘건강한 편이다’와 ‘매우 건강하다’)가 48.1%로 나타나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농업인이 많았다(표 4-17 참조).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면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만성질병은 몇 가지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없다’가 54.8%, ‘1개’가 23.6%, ‘2개 이상’이 21.6%로 나타났다(표 4-18 참조).

<표 4-17> 자신의 건강상태

응답범주	빈도	비율(%)
매우 나쁘다	10	0.9
나쁜 편이다	157	14.9
그저 그렇다	381	36.1
건강한 편이다	477	45.2
매우 건강하다	31	2.9
계	1,056	100.0

<표 4-18> 만성질병 수

응답범주	빈도	비율(%)
3개 이상	76	7.3
2개	149	14.3
1개	246	23.6
없다	570	54.8
계	1,041	100.0

2. 농부증 실태

농부증의 판정방법은 농부증의 8가지 증상(어깨 결림, 요통, 손발 저림, 야간 빈뇨, 호흡 곤란, 불면증, 어지럼, 복부팽만감)이 각각 최근 1개월 간 자주(항상) 있었으면 2점, 가끔 있었으면 1점, 전혀 없었으면 0점으로 하여 점수 합계가 7점 이상이면 농부증 ‘양성’, 3점 이상 6점 이하면 농부증 ‘의증’, 2점 이하면 농부증 ‘음성’으로 판정하였다.

농업인 응답자의 34.0%는 농부증 ‘음성’이고, 46.3%는 농부증 ‘의증’, 20.7%는 농부증 ‘양성’으로 나타났다. 즉, 농부증 ‘의증’ 이상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2/3 정도였다(표 4-19 참조).

<표 4-19> 농부증

응답범주	빈도	비율(%)
음성(2점 이하)	365	34.0
의증(3점~6점)	497	46.3
양성(7점 이상)	222	20.7
계	1,075	100.0

3. 생활만족도

‘선생님은 현재 자신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와 ‘그런대로 만족하는 편이다’)가 61.6%, ‘만족하지 못하다’(‘별로 만족하지 못하다’와 ‘전혀 만족하지 못하다’)가 14.5%로 나타나 만족하는 응답자가 불만족하는 응답자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20 참조).

‘선생님은 앞으로 즐겁고 좋은 일들이 얼마나 생길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생길 것 같다’(‘많이 생길 것 같다’와 ‘어느 정도 생길 것 같다’)가 73.4%, ‘생기지 않을 것 같다’(‘별로 생기지 않을 것 같다’와 ‘전혀 생기지 않을 것 같다’)가 6.9%로 나타나 농업인들은 미래 행복도 진단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었다(표 4-21 참조).

‘선생님은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끼시는 때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느낀다’(‘자주 느낀다’와 ‘가끔 느낀다’)가 35.0%, ‘느끼지 않는다’(‘별로 느끼지 않는다’와 ‘전혀 느끼지 않는다’)가 49.5%로 나타났다(표 4-22 참조).

<표 4-20> 생활만족도

응답범주	빈도	비율(%)
매우 만족한다	76	7.2
그런대로 만족하는 편이다	574	54.4
그저 그렇다	253	24.0
별로 만족하지 못하다	138	13.1
전혀 만족하지 못하다	15	1.4
계	1,056	100.0

<표 4-21> 미래 행복도 진단

응답범주	빈도	비율(%)
많이 생길 것 같다	276	26.2
어느 정도 생길 것 같다	498	47.2
그저 그렇다	209	19.8
별로 생기지 않을 것 같다	67	6.4
전혀 생기지 않을 것 같다	5	0.5
계	1,055	100.0

<표 4-22> 고독감 인지 빈도

응답범주	빈도	비율(%)
자주 느낀다	35	3.3
가끔 느낀다	334	31.7
그저 그렇다	164	15.6
별로 느끼지 않는다	414	39.3
전혀 느끼지 않는다	107	10.2
계	1,054	100.0

4. 건강 측면 노후준비

‘선생님은 건강 측면에서 노후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준비하고 있다’(‘충분히 하고 있다’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가 31.9%, ‘못하고 있다’(‘거의 못하고 있다’와 ‘전혀 못하고 있다’)가 29.2% 나타났다(표 4-23 참조).

<표 4-23> 건강 측면 노후준비 정도

응답범주	빈도	비율(%)
충분히 하고 있다	30	2.8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	307	29.1
보통이다	409	38.8
거의 못하고 있다	265	25.1
전혀 못하고 있다	43	4.1
계	1,054	100.0

제4절 농업인의 노후 준비 실태

1. 노인의 기준 및 장수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노인이라면 몇 세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70세’가 61.6%로 가장 많았고, ‘65세’가 22.5%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응답자의 3/4 정도가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표 4-24 참조).

<표 4-24> 노인의 기준(시작) 연령

응답범주	빈도	비율(%)
60~64세	27	2.6
65세	237	22.5
66~69세	11	1.0
70세	649	61.6
71세 이상	130	12.3
계	1,054	100.0

‘선생님은 오래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긍정적 응답(‘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이 41.5%, 부정적 응답(‘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이 27.5%로 나타났다(표 4-25 참조).

‘선생님은 왜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노인문제(빈곤, 질병, 소외, 고독감)의 발생 때문’에 58.1%, ‘노년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21.1%, ‘자식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가 12.1% 순이었다(표 4-26 참조).

<표 4-25> 장수를 축복으로 생각하는 정도

응답범주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85	8.0
그렇다	354	33.5
보통이다	327	30.9
그렇지 않다	251	23.7
전혀 그렇지 않다	40	3.8
계	1,057	100.0

<표 4-26> 장수를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응답범주	빈도	비율(%)
자식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35	12.1
국가·사회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18	6.2
노인문제(빈곤, 질병, 소외, 고독감)의 발생 때문에	168	58.1
노년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61	21.1
기타	7	2.4
계	289	100.0

2. 노후준비 시작 시기

‘선생님은 노후준비를 언제부터 해오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했다’가 39.1%, ‘당장의 생계유지에 급급하여 노후생활 준비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가 22.3%, ‘오래 전부터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가 21.2%, ‘최근에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가 16.6%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후준비를 실천하고 있는 경우(‘오래 전부터 노후생활을 위

한 준비를 해왔다’와 ‘최근에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자의 1/3 정도에 불과했다(표 4-27 참조).

<표 4-27> 노후준비 시작 시기

응답범주	빈도	비율(%)
오래 전부터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225	21.2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했다	414	39.1
최근에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176	16.6
당장의 생계유지에 급급하여 노후생활 준비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236	22.3
기타	9	0.8
계	1,060	100.0

3.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분야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분야(1순위)는 ‘건강’이 59.0%, ‘생활비 마련’이 25.9%, ‘자녀 뒷바라지’가 7.9%, ‘의료비’가 4.7% 순이었다(표 4-28 참조).

<표 4-28>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분야(1순위)

응답범주	빈도	비율(%)
건강	625	59.0
생활비 마련	274	25.9
자녀 뒷바라지	84	7.9
의료비(병원비, 약값 등)	50	4.7
외로움	12	1.1
주택 마련	10	1.0
기타	4	0.4
계	1,059	100.0

4. 월 평균 노후생활비

농업인이 생각하는 월 평균 개인 최소생활비는 ‘51만원~100만원’이 54.0%로 가장 많았고, ‘101만원~150만원’이 18.1%, ‘50만원 이하’가 14.4% 순이었고, 평균은 114만원(월)이었다.(표 4-29 참조).

<표 4-29> 월 평균 개인 최소생활비

응답범주	빈도	비율(%)
50만원 이하	142	14.4
51만원~100만원	533	54.0
101만원~150만원	179	18.1
151만원~200만원	108	10.9
201만원 이상	26	2.6
계	988	100.0

평균: 114만원

농업인이 생각하는 월 평균 부부 최소생활비는 ‘151만원~200만원’이 31.4%로 가장 많았고, ‘101만원~150만원’이 25.1%, ‘100만원 이하’가 20.0% 순이었고, 평균은 193만원(월)이었다(표 4-30 참조).

<표 4-30> 월 평균 부부 최소생활비

응답범주	빈도	비율(%)
100만원 이하	199	20.0
101만원~150만원	249	25.1
151만원~200만원	312	31.4
201만원~250만원	63	6.3
251만원 ~300만원	133	13.4
301만원 이상	38	3.8
계	994	100.0

평균: 193만원

농업인이 생각하는 월 평균 개인 적정생활비는 ‘101만원~150만원’이 29.0%로 가장 많았고, ‘151만원~200만원’이 17.1%, ‘51만원~100만원’이 24.5% 순이었고, 평균은 174만원(월)이었다(표 4-31 참조).

<표 4-31> 월 평균 개인 적정생활비

응답범주	빈도	비율(%)
50만원 이하	38	4.0
51만원~100만원	234	24.5
101만원~150만원	277	29.0
151만원~200만원	258	27.1
201만원 이상	147	15.4
계	954	100.0

평균: 174만원

농업인이 생각하는 월 평균 부부 적정생활비는 ‘251만원~3000만원’이 26.2%로 가장 많았고, ‘151만원~200만원’이 21.8%, ‘301만원 이상’이 20.4% 순이었고, 평균은 286만원(월)이었다(표 4-32 참조).

<표 4-32> 월 평균 부부 적정생활비

응답범주	빈도	비율(%)
100만원 이하	66	6.8
101만원~150만원	110	11.4
151만원~200만원	210	21.8
201만원~250만원	129	13.4
251만원 ~300만원	252	26.2
301만원 이상	196	20.4
계	963	100.0

평균: 286만원

5. 노후준비에 관한 교육이나 상담 경험

‘선생님은 노후준비에 관한 교육이나 상담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있다’가 13.4%, ‘없다’가 86.6%로 나타나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노후준비에 관한 교육이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33 참조).

‘선생님은 노후준비에 관한 교육이나 상담을 받아보실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있다’가 67.1%, ‘없다’가 17.7%, ‘모르겠다’가 15.1%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2/3 이상이 노후준비에 관한 교육이나 상담을 받아볼 의향이 있다(표 3-34 참조).

<표 4-33> 노후준비에 관한 교육이나 상담 경험

응답범주	빈도	비율(%)
있다	142	13.4
없다	918	86.6
계	1,060	100.0

<표 4-34> 향후 노후준비에 관한 교육이나 상담 참여의사

응답범주	빈도	비율(%)
있다	613	67.1
없다	162	17.7
모르겠다	138	15.1
계	913	100.0

6. 현행 노후준비 노력

‘현재 선생님이 노후준비를 위해 하시고 있는 노력들을 모두 ✓표 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에 의하면, 각 노후준비 종류별 노력 수행 참여 비율은 ‘농업소득 증대’가 81.5%, ‘국민연금 가입’이 68.%, ‘예·적금’이 54.8%, ‘개인연금 가입’이 34.6%, ‘농지 매입’이 29.3%, ‘자녀에 대한 투자’가 23.5% 순으로 나타났다(표 4-35 참조).

현행 노후준비가 노후대책으로 얼마나 충분한 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충분할 것이다’(‘매우 충분할 것이다’와 ‘충분할 것이다’)가 29.9%, ‘부족할 것이다’(‘약간 부족할 것이다’와 ‘많이 부족할 것이다’)가 25.5%로 나타났다(표 4-36 참조).

<표 4-35> 현행 노후준비 노력

N=1,075명

노후준비 종류	노력 수행 빈도	각 노후준비 종류별 노력 수행 참여 비율
국민연금 가입	736	68.5
개인연금 가입	372	34.6
농업소득 증대	876	81.5
예·적금	589	54.8
부동산 투자	166	15.4
주식 투자	41	3.8
자녀에 대한 투자	253	23.5
농지 매입	315	29.3
주택 매입	68	6.3
기타	48	4.5

<표 4-36> 현행 노후준비의 충분 정도

응답범주	빈도	비율(%)
매우 충분할 것이다	42	4.0
충분할 것이다	272	25.9
보통일 것이다	468	44.6
약간 부족할 것이다	172	16.4
많이 부족할 것이다	96	9.1
계	1,050	100.0

앞으로 노후 생활비 마련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노후준비 노력(1순위)으로는 ‘농업소득 증대’가 46.8%, ‘국민연금 가입’이 20.4%, ‘예·적금’이 8.7%, ‘개인연금 가입’이 6.4%, ‘농지 매입’이 5.9%, ‘부동산 투자’가 5.3% 순이었다(표 4-37).

<표 4-37> 노후 생활비 마련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노후준비 노력(1순위)

응답범주	빈도	비율(%)
농업소득 증대	468	46.8
국민연금 가입	204	20.4
예·적금	87	8.7
개인연금 가입	64	6.4
농지 매입	59	5.9
부동산 투자	53	5.3
자녀에 대한 투자	33	3.3
주택 매입	14	1.4
주식 투자	2	0.2
기타	16	1.6
계	1,000	100.0

7. 노후 준비 정도

생활비 마련(경제적 준비)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를 살펴보면, 부정적 응답(‘전혀 준비되지 않음’과 ‘준비되지 않음’)이 25.3%, 긍정적 응답(‘준비됨’과 ‘매우 준비됨’)이 20.3%로 나타났고,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2.90점이었다(표 4-38 참조).

<표 4-38> 생활비 마련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응답범주	빈도	비율(%)
전혀 준비되지 않음(1점)	106	10.2
준비되지 않음(2점)	158	15.1
보통(3점)	568	54.5
준비됨(4점)	152	14.6
매우 준비됨(5점)	59	5.7
계	1,043	100.0

평균: 2.90점

건강관리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를 살펴보면, 부정적 응답(‘전혀 준비되지 않음’과 ‘준비되지 않음’)이 23.7%, 긍정적 응답(‘준비됨’과 ‘매우 준비됨’)이 20.9%로 나타났고,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2.93점이었다(표 4-39 참조).

<표 4-39> 건강관리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응답범주	빈도	비율(%)
전혀 준비되지 않음(1점)	82	7.9
준비되지 않음(2점)	164	15.8
보통(3점)	577	55.4
준비됨(4점)	179	17.2
매우 준비됨(5점)	39	3.7
계	1,041	100.0

평균: 2.93점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를 살펴보면, 부정적 응답(‘전혀 준비되지 않음’과 ‘준비되지 않음’)이 24.2%, 긍정적 응답(‘준비됨’과 ‘매우 준비됨’)이 24.1%로 나타났고,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2.97점이었다(표 4-40 참조).

<표 4-40> 보건·의료비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응답범주	빈도	비율(%)
전혀 준비되지 않음(1점)	92	8.9
준비되지 않음(2점)	158	15.3
보통(3점)	536	51.8
준비됨(4점)	182	17.6
매우 준비됨(5점)	67	6.5
계	1,035	100.0

평균: 2.97점

주거 마련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를 살펴보면, 부정적 응답(‘전혀 준비되지 않음’과 ‘준비되지 않음’)이 10.5%, 긍정적 응답(‘준비됨’과 ‘매우 준비됨’)이 70.0%로 나타났고,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03점이었다(표 4-41 참조).

<표 4-41> 주거 마련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응답범주	빈도	비율(%)
전혀 준비되지 않음(1점)	51	4.9
준비되지 않음(2점)	58	5.6
보통(3점)	203	19.5
준비됨(4점)	228	21.9
매우 준비됨(5점)	500	48.1
계	1,040	100.0

평균: 4.03점

소일거리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를 살펴보면, 부정적 응답(‘전혀 준비되지 않음’과 ‘준비되지 않음’)이 22.2%, 긍정적 응답(‘준비됨’과 ‘매우 준비됨’)이 43.1%로 나타났고,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33점이 었다(표 4-42 참조).

<표 4-42> 소일거리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응답범주	빈도	비율(%)
전혀 준비되지 않음(1점)	97	9.4
준비되지 않음(2점)	133	12.8
보통(3점)	359	34.7
준비됨(4점)	224	21.6
매우 준비됨(5점)	223	21.5
계	1,036	100.0

평균: 3.33점

취미·여가 생활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를 살펴보면, 부정적 응답(‘전혀 준비되지 않음’과 ‘준비되지 않음’)이 37.0%, 긍정적 응답(‘준비됨’과 ‘매우 준비됨’)이 26.4%로 나타났고,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2.81 점이었다(표 4-43 참조).

<표 4-43> 취미·여가 생활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응답범주	빈도	비율(%)
전혀 준비되지 않음(1점)	178	17.1
준비되지 않음(2점)	207	19.9
보통(3점)	378	36.4
준비됨(4점)	180	17.3
매우 준비됨(5점)	95	9.1
계	1,038	100.0

평균: 2.81점

8. 바람직한 노후 준비 방식

‘부부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본인이 주로 준비하고 국가가 일부를 담당해야 한다’가 4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노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가 26.9%, ‘전적으로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가 22.8%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노후를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0.2%에 불과했다(표 4-44 참조).

<표 4-44> 바람직한 노후 준비 방식

응답범주	빈도	비율(%)
전적으로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	241	22.8
본인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족하므로 자녀와 가족들이 일부 지원해 주어야 한다	48	4.5
본인이 주로 준비하고 국가가 일부를 담당해야 한다	479	45.3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노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84	26.9
자녀에게 노후를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	0.2
기타	3	0.3
계	1,057	100.0

9. 현재 생활과 노후생활의 비교 전망

‘선생님은 노후 생활이 현재 생활과 비교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좋아질 것이다’(‘훨씬 좋아질 것이다’와 ‘약간 좋아질 것이다’)가 54.4%, ‘나빠질 것이다’(‘약간 나빠질 것이다’와 ‘매우 나빠질 것이다’)가 15.4%로 나타나 긍정적인 전망이 훨

씬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45 참조).

<표 4-45> 현재 생활과 노후생활의 비교 전망

응답범주	빈도	비율(%)
훨씬 좋아질 것이다	171	16.2
약간 좋아질 것이다	404	38.2
그저 그럴 것이다	321	30.3
약간 나빠질 것이다	135	12.8
매우 나빠질 것이다	27	2.6
계	1,058	100.0

제5절 농업인의 노후 준비 계획

1. 노후 영농 계획

가. 영농 중단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농사를 그만둘 생각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앞으로 농사를 그만 둘 생각이다’가 34.6%, ‘사는 동안 계속 농사를 짓겠다’가 50.9%,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가 14.5%로 나타났다(표 4-46 참조).

영농 중단 희망 연령은 70세가 35.5%, 65세가 27.6%, 60세 이하가 14.8%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절반 정도(49.1%)가 영농 중단 희망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잡고 있었다(표 4-47 참조).

<표 4-46> 영농 중단 의사

응답범주	빈도	비율(%)
앞으로 농사를 그만 둘 생각이다	364	34.6
사는 동안 계속 농사를 짓겠다	536	50.9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153	14.5
계	1053	100.0

<표 4-47> 영농 중단 희망 연령

응답범주	빈도	비율(%)
60세 이하	52	14.8
61세~64세	18	5.1
65세	97	27.6
66세~69세	12	3.4
70세	125	35.5
71세 이상	48	13.6
계	352	100.0

나. 영농 중단 후 소일거리

‘선생님은 힘이 들어 농사를 못하게 될 경우 어떻게 소일하면서 지낼 생각이십니까?(1순위)’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텃밭 정도만 운동 삼아 할 것이다’가 67.8%, ‘마을이나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할 것이다’가 12.8%, ‘농사일을 전혀 하지 않고 취미생활을 할 것이다’가 5.8%,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가 5.4%, ‘농사 이외의 다른

일거리를 운동 삼아 할 것이다'가 5.0%로 나타났다(표 4-48 참조).

<표 4-48> 영농 중단 후 소일거리(1순위)

응답범주	빈도	비율(%)
텃밭 정도만 운동 삼아 할 것이다	722	67.8
농사일을 전혀 하지 않고 취미생활을 할 것이다	62	5.8
마을이나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할 것이다	136	12.8
농사 이외의 다른 일거리를 운동 삼아 할 것이다	53	5.0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	58	5.4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1	0.1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33	3.1
계	1,065	100.0

2. 농지연금

가. 인지도

‘선생님은 농지연금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안다’(‘매우 잘 안다’와 ‘어느 정도 안다’)가 64.0%, ‘모른다’(‘잘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가 10.5%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1/3 정도는 농지연금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다(표 4-49 참조)

<표 4-49> 농지연금 인지도

응답범주	빈도	비율(%)
매우 잘 안다	198	18.7
어느 정도 안다	481	45.3
들어본 적은 있다	270	25.4
잘 모른다	82	7.7
전혀 모른다	30	2.8
계	1,061	100.0

나. 활용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농지연금제도를 노후대책으로 활용할 생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그렇다’가 31.5%, ‘아니다’가 42.2%, ‘모르겠다’가 26.3%로 나타났다(표 4-50 참조).

<표 4-50> 노후대책으로 농지연금제도 활용의사

응답범주	빈도	비율(%)
그렇다	330	31.5
아니다	441	42.2
모르겠다	275	26.3
계	1,046	100.0

다. 농지연금을 노후대책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

‘농지연금을 노후대책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남은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하여’가 32.4%, ‘현재 준비한 대책으로도 충분하므로’가 23.1%, ‘소유한 농지

(자산)가 없으므로'가 19.3%로 나타났다(표 4-51 참조).

<표 4-51> 농지연금을 노후대책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

응답범주	빈도	비율(%)
남은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하여	222	32.4
소유한 농지(자산)가 없으므로	132	19.3
현재 준비한 대책으로도 충분하므로	158	23.1
자녀가 농지연금 가입을 반대해서	5	0.7
기타	168	24.5
계	685	100.0

3. 경영이양직불제

가. 인지도

‘선생님은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안다’(‘매우 잘 안다’와 ‘어느 정도 안다’)가 47.2%, ‘모른다’(‘잘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가 29.1%로 나타나 경영이양직불제를 아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표 4-52 참조).

<표 4-52> 경영이양직불제 인지도

응답범주	빈도	비율(%)
매우 잘 안다	156	14.7
어느 정도 안다	344	32.5
들어본 적은 있다	250	23.6
잘 모른다	217	20.5
전혀 모른다	91	8.6
계	1,058	100.0

나. 활용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경영이양직불제를 노후대책으로 활용할 생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그렇다’가 39.2%, ‘아니다’가 60.8%로 나타났다(표 4-53 참조).

<표 4-53> 경영이양직불제 활용의사

응답범주	빈도	비율(%)
그렇다	405	39.2
아니다	627	60.8
계	1,032	100.0

4. 영농중단 시 농지처분 계획

‘선생님은 농사를 짓다가 그만둘 경우 농지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노후 생활비로 쓸 것이다’가 40.9%, ‘자녀들에게 상속하고 노후를 의지할 것이다’가 17.2%, ‘판매한 자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것이다’가 16.3%, ‘판매한 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것이다’가 12.4%로 나타났다(표 4-54 참조).

<표 4-54> 영농중단 시 농지처분 계획

응답범주	빈도	비율(%)
자녀들에게 상속하고 노후를 의지할 것이다	181	17.2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노후 생활비로 쓸 것이다	429	40.9
판매한 자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것이다	171	16.3
판매한 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것이다	130	12.4
농지가 없어 해당사항이 없다	88	8.4
기타	51	4.9
계	1,050	100.0

5. 노후를 위한 주택마련 계획

‘선생님은 부부가 노후에 살 주택은 마련되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그대로 살 것이다’가 67.8%, ‘주택이 노후되어 헐고 새로 지어야 한다’가 10.8%,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보수해서 살 것이다’가 10.1%, ‘주택이 없어 새로 마련해야 한다’가 8.6%로 나타났다. 즉, 주택을 개보수 또는 신축하거나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29.5%로 나타났다(표 4-55 참조).

<표 4-55> 노후를 위한 주택

응답범주	빈도	비율(%)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그대로 살 것이다	721	67.8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보수해서 살 것이다	107	10.1
주택이 없어 새로 마련해야 한다	91	8.6
주택이 노후되어 헐고 새로 지어야 한다	115	10.8
자녀와 함께 살 것이다	4	0.4
기타	25	2.4
계	963	100.0

6. 노후의 희망사항

‘선생님은 노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노후의 희망사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취미 생활을 하고 싶다’가 91.8%, ‘국내외 여행을 다니고 싶다’가 83.8%,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가 81.3%,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가 81.0%, ‘본인의 지식과 기술을 이웃에 전해주고 싶다’가 79.5%, ‘노후에도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이다’가 66.2%, ‘농사 이외의 돈 되는 소일거리를 하고 싶다’가 63.3%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자녀들을 계속 뒷바라지 하려고 한다’는 응답은 30.7% 불과하였다(표 4-5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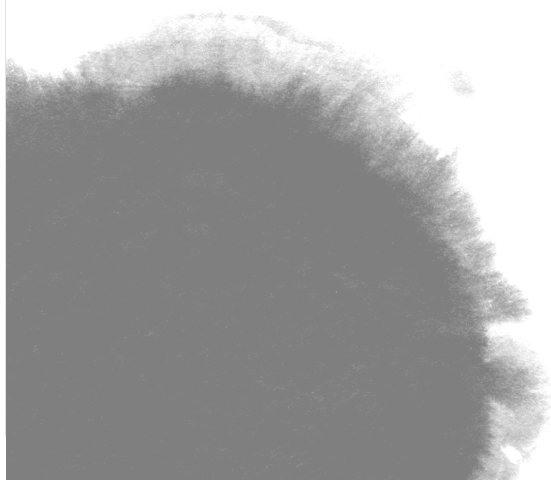
<표 4-56> 노후의 희망사항(복수응답)

N=1,075명

노후의 희망사항(계획)	‘그렇다’는 응답 빈도	각 사항별 백분율(%)
노후에도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이다	699	66.2
농사 이외의 돈 되는 소일거리를 하고 싶다	650	63.3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850	81.3
자녀들을 계속 뒷바라지 하려고 한다	312	30.7
본인의 지식과 기술을 이웃에 전해주고 싶다	814	79.5
국내외 여행을 다니고 싶다	867	83.8
취미 생활을 하고 싶다	958	91.8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	836	81.0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다	55	5.5

5장

농업인 노후준비를 위한 정책대안





제5장 농업인 노후준비를 위한 정책대안

제1절 기본방향

1.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우선 활용

노후준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크게 나누면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의 두 가지이다. 전자는 국가가 적극 간여하는 방법으로 강제성을 띤다. 국가적으로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제도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 개인은 물론 국가사회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이며, 농지연금도 고령농업인에게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들은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간여하기 때문에 보장성이 강하며, 여타의 사적 수단들에 비해 수익성도 높기 때문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2. 노후준비의 다양화

공적 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각자의 능력에 적합한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필요한 소득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운용이 당초 예상과 달리

순조롭지 못하며 앞으로도 경제의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연금 실시 초기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높게 설정했던 소득대체율³⁴⁾을 몇 차례 하향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연금 재정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와 장수, 출산율 저하, 경제의 저성장 등에 의한 시대적 환경 변화는 노후 소득보장 문제에 있어서 공적연금제도만으로는 점차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다층 노후보장체계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업인 개개인도 보유한 자산규모와 건강 상태에 따라 동원 가능한 방법을 다양하게 동원하도록 한다(표5-1). 예를 들어 보유자산은 적지만 건강한 경우에는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 평생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면서 개인적으로도 보람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공적연금 외에 사적연금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표5-1> 농업인 능력에 따른 유형 구분의 예

자산(소득)규모 건강 수준	적음(少)	많음(多)
나쁨(不良)	I	III
좋음(良好)	II	IV

34) 소득대체율은 퇴직 전 평균 임금 대비 연금수급액의 비율을 말하는데,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는 70%로 시작했던 소득대체율이 현재는 50%이며 장기적으로 40%로 낮출 예정이다.

3. 자립기반 구축

젊어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뒷바라지하며 나이 들어서는 자녀들의 부양을 받는 전통적인 가족부양제도는 이미 와해된 지 오래되었다. 부모부양의식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쫓아 거주지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자녀의 부모부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자녀들도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기 때문에 부모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장년 농업인은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지고 준비한다는 자세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의 노후 생활은 죽음을 기다리는 여생(餘生)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활기찬 노년(active aging), 성공적 노년(successful aging)을 만들어 가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2절 정책대안

1. 농업인 노후준비 실태 정기 조사

농업인이 각자의 노후준비를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인의 노후준비 실태가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이 주축이 되어 국민노후보장패널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다양하게 분석·활용하고 있다. 이 패널조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인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농업인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농업인의 경우에

도 국민노후보장패널과 유사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5년마다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5년마다 수립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전 실태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사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앞으로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의 대상을 확대하여 농어업인 뿐만 아니라 농어촌주민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 적극 유도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이 우선 공적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성격이나 소득대체율이 도입 시에 비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타의 사적 연금 상품에 비하면 수익성이나 보장성이 월등하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업인의 경우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할 소득보장수단임에는 변함이 없다.

농업인들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보험’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성향이 강하므로 국민연금 가입의 필요성, 노후생활에서의 중요성 등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교육 및 홍보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매년 겨울철에 실시되는 새해 영농교육 및 각종 농어업인 교육 기회를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의 협조를 받되 농식품부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는 농업인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따금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국민연금 재정전망의 어두운 측면만을 보고 농업인들은 국민연금과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표준소득등급까지는 정률(50%)로 지원하고 표준소득등급 이상의 경우에는 정액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방법을 조정하여 저소득 농업인이 보다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3. 여성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권장

여성농업인은 영농활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은 농업노동에서 남성 못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가사 및 자녀양육 등을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경제력을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노후도 전적으로 남성 배우자에게 달려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여성농업인도 독립된 경영인으로 인정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노후 준비는 물론 농가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다행히 농림수산물식품부는 내년(2013년)부터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에게도 간단한 확인을 거쳐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계획 하에 예산을 확보하였다³⁵⁾. 여성농업인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장차 고령 농가의 노후준비를 충실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과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성농업인도 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35) 농림수산물식품부(2012.11.9). 보도자료: 국민연금 농어업인 수급권자 609천 명, 월수급액 191천 원

4. 국민연금 가입 수준 향상 유도

농업인은 대다수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가입했다더라도 낮은 표준소득등급으로 가입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게 되어 노후 생활비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등을 분석해보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들은 대다수가 마지못해 가입했으나 연금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금보험료를 자신의 실제 소득수준보다 낮게 내면 당장에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노후에 그만큼 낮아진 연금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업인이 자신의 실제소득에 가까운 기준소득 금액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각자의 소득수준에 맞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농업인들도 자신의 실제 소득수준에 맞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본인은 물론 국민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점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5. 농지연금제도 개선

농지연금은 2011년부터 실시되어 아직 정착되지 못했으나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농지연금의 수익비가 주택연금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마승렬 2011). 그만큼 농지연금이 고령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여타의 소득확보수단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 초기인 농지연금이 고령 농업인이나 은퇴 농업인의 노후준비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있다. 첫째, 월 지급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적극

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담보농지 가격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유 농지가 소규모인 영세 고령 농업인들의 경우 현행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³⁶⁾. 예를 들어 일정 규모(예를 들면,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에서 일정 비율로 우대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지연금 관련 예산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 셋째, 주택연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농지연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경향은 농지연금 확산의 주요 장애요인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농업인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농지연금을 전업농 육성 및 구조개선정책과 연계하여 관련 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농지연금은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내재하는 장기상품이다. 매년 적절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고려하여 사업의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위험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론과 실무기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농지연금의 지속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6. 고령 농업인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이미 농촌지역에서도 노동력 부족으로 인력

36) 감정평가 방법으로 농지가격을 산정하여 월지급금액을 산정하더라도 영세한 농업인에게는 충분한 생활자금이 되지 못할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현 농지연금제도만으로는 영세 농업인의 노후 생계보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영세농업인을 보조하는 논의도 필요하다(김창기 2012, P.10).

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로 그 중의 일부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농업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농업인이 은퇴한다면 농업노동력 부족 문제는 생각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고령 농업인은 반드시 은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허락하는 한 평생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접근이 필요하다.

고령 농업인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고령친화 농업이다. 고령친화 농업은 ‘노인을 소비자로 상징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농산품을 생산·가공·유통하는 것’과 ‘노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농산품을 생산·가공·유통하는 것’을 포괄한다. 고령친화 농업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업부문에서 건강한 고령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복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영농활동을 통한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후 경제생활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 즉, 생산적 사회참여를 통하여 자립과 자활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셋째, 적정 수준의 근로활동을 통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보건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여건에 알맞은 영농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보건의료비도 절감시킬 수 있어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넷째, 도시자본의 농촌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도시의 유희인력을 농업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 농촌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령친화 농업의 예로는 노동집약적 소득작목(예: 약초, 복분자, 블루베리, 양잠, 양봉 등) 및 경량채소(예: 대파, 고추, 마늘 등) 재배 등을 들 수 있으며, 농업경영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면 농촌관광, 전통식품가공사업 등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노인들이 가능한 한 근로활동을 오래 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

적 기반을 구축하고 제도적으로 이러한 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것은 비록 농업부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해당하는 과제라고 할 것이다.

7. 농업인의 노후준비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들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 노후준비는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준비가 충분하지 못해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을 만족스럽게 보내기 위해서는 중년기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노력이 절실하며 청·장년 농업인도 예외일 수 없다. 성공적인 노후생활(successful aging)은 특정한 영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신체적, 가족적, 여가적, 사회환원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후준비도 다방면에서 장기간에 걸쳐 차근차근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노후준비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는 일회성의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기초교육과정과 중급 및 고급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 형식도 집합교육, 찾아가는 면담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하게 추진한다. 현재 대학, 노인복지기관, 국민연금공단, 종교기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도 체계화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교육과 아울러 농업인 개개인에 대한 노후 준비 컨설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전문가나 지역농협 재무설계 전문가 등을 활용하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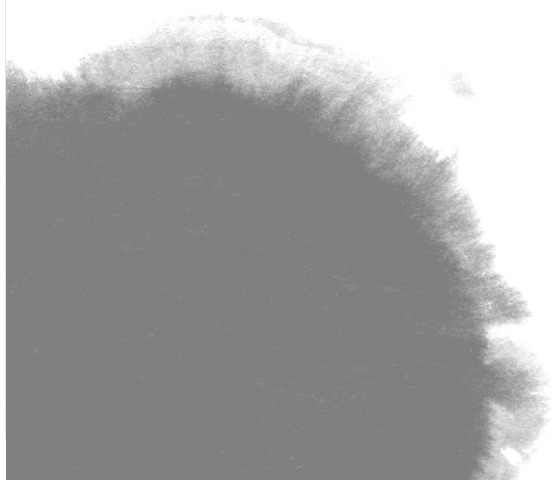
- 구인회(2008).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사회보장연구』 제24권 제1호 pp:175~204.
- 김성숙 등(2001).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 김수완 김상진(2012). “지역자의 다층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공사 연금 가입행태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27.
- 김시원 등(2006). 『제1차(2005년도)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국민노후소득보장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조사보고서 2006-01. 국민연금연구원.
- 김운근 등(1985). 『고령화추세에 따른 농업구조조정 및 제도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최경환·이용호(2007).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 지원제도 도입방안』. C2007-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창기. 2012. “농지연금의 리스크 요인 분석”. 『부동산 포커스』.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 김현수(2012).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의 국민연금 역할 재정립에 관한 논의”. 한국사회보장학회 2012 춘계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
- 김혜진(2012). “중년층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이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제도 인지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32권.

- 류근옥·마승렬(2012).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총대출비용률(TLCR) 평가 연구”. 「주택연구」 제20권 제3호: 77~102.
- 마승렬(2011). “즉시연금과 역모기기(주택연금, 농지연금)의 수익비 비교”. 「리스크관리연구」 제22권 제2호: 3~39.
- 문진영·김미곤·여유진(2008). 「농어촌지역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 개선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 박대식(2004).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실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등(2011).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정명채·허 장(2000). 「노령 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생산적 복지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최경환(2006). 「농촌 노인의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최경환·윤병석(2009). 「농영세·고령농의 사회안전망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창제(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제3호:275~297.
- 백화중·석상훈·김현수·이은영(2011). 「한국인의 은퇴준비와 노후소득 수준의 적절성 평가」. 국민연금연구원.
- 보건복지부(2012.2.21). 보도자료:“내 노후준비는 몇점? 스스로 알아보는 은퇴성적표!”.
- 석상훈 등(2011).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와 기대(Ⅱ): 제3차(2010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 부가조사 분석보고서」. 국민연금연구원.
- 석상훈(2012). “노인 세대의 빈곤 추이와 특징”. 「연금포럼」 2012 가을호 Vol. 47. 국민연금연구원.

- 석상훈·김현수(2012). “노인빈곤의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생애 근로이력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제5권 제3호(통권 제74호):99~
124.
- 석재은·김태완(2000).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
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양재진(2011).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 방안”. 「2011년 한
국행정학회 동계대회 발표논문」.
- 오영수 등(2006). “고령화리스크의 진전과 노후보장체계의 재구축.” 『금융연
구』 19권 별책. pp:129-207.
- 오영희 외(2011).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 오희장·조덕호(2009). “농지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조사로서 농촌 고령
자의 상속성향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2호(2009여름): 93
~108.
- 우해봉(2010). “여성 무소득 배우자의 노후 준비 현황과 정책적 함의”.
「사회복지정책」 제37권 제1호:311~338.
- 원시연(2011).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 「국회입법조사처소식지」.
- 원종현(2010). 「고령화에 따른 장수위험 대응방안. 연금지출에 대한 부담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 윤석명 외(2011).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
조사 및 분석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석명 외(2011). 「노후준비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
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 이영대·정명채(1988). “농가유형별 노후준비실태분석.” 『농촌경제』 41권.
pp.67-78.

- 이용하(2000). “농어촌지역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농촌사회 학회 2000년도 여름학술대회 자료집.
- 이용하(2011). “다층연금체계 구축: 내실화 방안을 중심으로”. 『연금연구』 제1권 제2호 한국연금학회: 1~27.
- 이준우·이현아·황준호(2011). “한국 노인의 노후생활과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도농복합지역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2011년 한국노년학회 춘계학술대회』.
- 정명채 등(1994).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국민연금 확대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경환(2007). “농업인 노후 대비 소득보장의 실태와 과제.” 『농업전망 2007(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경환·황의식(2007). 「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은희(2006).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역저당제도의 잠재수요 특성 분석.”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석호 등(2012.6). “2012년 상반기 KREI 농업경제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2.9). “KB노후준비지수로 살펴본 한국인 노후 준비 실태”. KB연구보고서.

100



1. 보건복지부 노후준비지표

가. 영역별 노후준비유형(16개)³⁷⁾

영역	유형	설 명
사회적 관계	고립형	배우자·자녀·형제자매와의 관계 및 친구·이웃과의 관계 모두 활발하지 못하고, 모임 참석 등도 활발하지 못한 유형
	친족 중심형	배우자·자녀·형제자매와의 관계는 활발하지만 친구·이웃과의 관계 및 모임참석 등이 활발하지 못한 유형
	소규모다층형	배우자·자녀·형제자매와의 관계는 활발하지 않지만 친구·이웃과의 관계 및 모임참석 등이 활발한 유형
	대규모 다층형	배우자·자녀·형제자매와의 관계 및 친구·이웃 등과의 관계 모두 활발하며 대인관계의 규모도 큰 유형
건강한 생활 습관	건강군 실천형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만성질환이나 스트레스에 상대적으로 덜 취약하며,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유형
	건강군 비실천형	건강상태는 양호하지만 건강생활 습관이 다소 실천적이지 못한 유형
	건강주의군 실천형	본인의 의지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고 있으나 만성질환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유형
	건강주의군 비실천형	건강상태 및 건강생활 습관 모두 양호하지 못한 유형으로 건강관리 노후설계 상담이 절실하게 필요한 유형
소득 과 자산	노후준비충분 공적자산형	가장 이상적인 유형으로 노후필요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산 규모를 갖고 있고 공적자산의 비중이 높은 유형
	노후준비부족 공적자산형	노후필요생활비를 충당하기 부족한 자산규모를 갖고 있고 공적자산의 비중이 높은 유형으로 노후생활비에 비해서 보유한 은퇴자산의 규모가 적고, 개인연금, 금융자산 등의 선택자산에 관심이 낮음
	노후준비충분 사적자산형	노후필요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산 규모를 갖고 있지만 사적자산 비중이 높은 유형
	노후준비부족 사적자산형	노후필요생활비를 충당하기 부족한 자산규모를 갖고 있고 사적자산 비중이 높은 유형
여가 활동	저관여-소극적	노후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및 준비에 대한 관여도가 낮고, 현재 여가생활의 일상성과 지속성에서 소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형
	저관여-적극적	노후여가생활에 대한 인식과 준비는 다소 미흡하지만, 현재의 여가생활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유형
	고관여-소극적	노후여가생활에 대한 인식과 준비는 어느 정도 양호하지만, 현재의 여가활동이 일상적이지 못하거나 지속적이지 못한 유형
	고관여-적극적	노후여가생활에 대한 인식과 준비에 대한 관여도가 양호하고, 현재의 여가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유형

자료: 보건복지부(2012.7.16). 보도자료: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민간과 공동으로 노후준비지표 개발.

3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2.21).“내 노후준비는 몇점? 스스로 알아보는 은퇴성적표!”.

나. 노후준비지표 구성

○ 사회적 관계 11개 지표

- 배우자와의 관계
 - 지표1: 배우자와 대화 충분성
 - 지표2: 배우자와 동반외출 빈도
- 자녀와의 관계
 - 지표3: 자녀와 대화 충분성
- 형제·자매와의 관계
 - 지표4: 형제·자매와 만나는 빈도
 - 지표5: 형제·자매로부터의 도움이나 지원 가능성
- 친구·이웃과의 관계
 - 지표6: 친구와 만나는 빈도
 - 지표7: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나 이웃 수
 - 지표8: 친구·이웃으로부터의 도움이나 지원 가능성
- 단체활동
 - 지표9: 참석하는 모임의 수
- 소영역별 중요도
 - 지표10: 대인 관계 소영역의 절대적 중요도
 - 지표11: 대인 관계 소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 건강 12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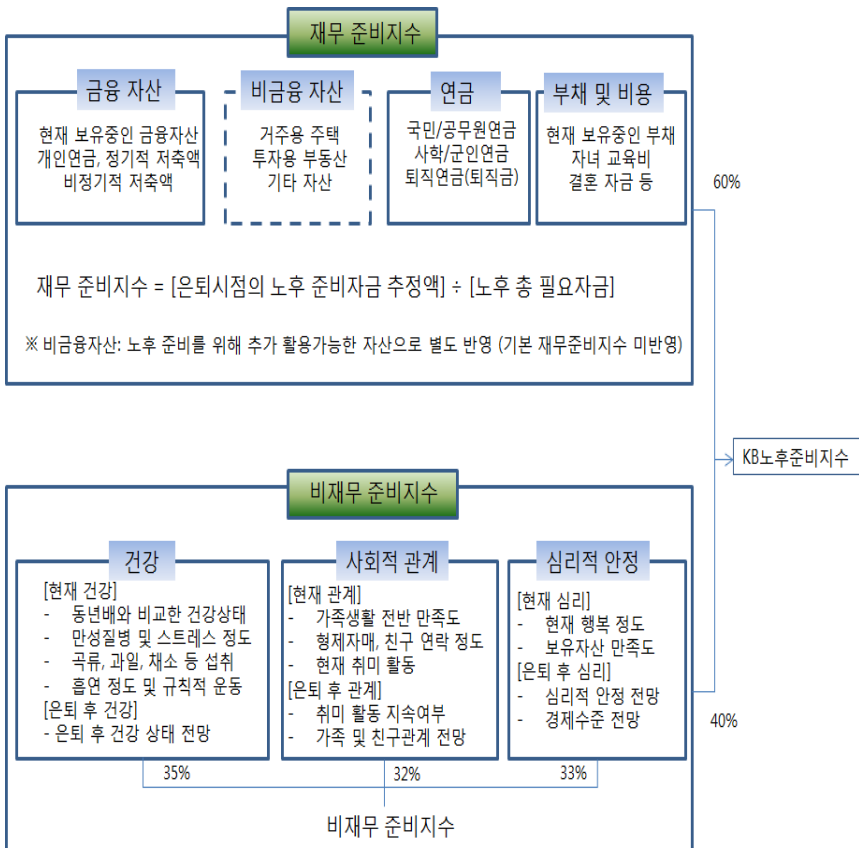
- 건강상태
 - 지표1: 스스로 인식한 건강상태
 - 지표2: 만성 질병 유무 및 만성 질병의 수
 - 지표3: 스트레스 정도
- 건강생활 실천 행위
 - 지표4: 흡연 유무 및 빈도
 - 지표5: 음주 횟수
 - 지표6: 정기적인 운동 실천 정도
 - 지표7: 균형 잡힌 식습관 실천 정도
 - 지표8: 건강유지를 위한 체중 관리
 - 지표9: 피로회복을 위한 수면의 충분성
 - 지표10: 정기적 건강검진 등 예방적 관리

- 소영역별 중요도
 - 지표11: 건강상태와 건강생활 실천행위의 절대적 중요도
 - 지표12: 건강상태와 건강생활 실천행위의 상대적 중요도
- 소득과 자산 12개 지표
 - 준비여건
 - 지표1: 소득활동기간 측정을 위한 은퇴연령
 - 지표2: 소득 안정성
 - 행태·인식
 - 지표3: 소득활동 중단 후 제2의 일을 위한 준비
 - 지표4: 노후 대비를 위한 개인연금 또는 장기저축
 - 지표5: 은퇴 이후 필요 생활비
 - 자산현황
 - 지표6: 공적연금 예상수령액 또는 수령액
 - 지표7: 퇴직연금 예상수령액 또는 수령액
 - 지표8: 개인연금 예상수령액
 - 지표9: 노후자금 활용 가능한 금융자산
 - 지표10: 노후자금으로 활용 가능한 부동산 자산
 - 소영역별 중요도
 - 지표11: 준비여건, 행태·인식, 자산현황의 절대적 중요도
 - 지표12: 준비여건, 행태·인식, 자산현황의 상대적 중요도
- 여가 7개 지표
 - 노후 여가생활 관여도
 - 지표1: 노후의 취미·여가생활에 대한 고려 여부
 - 지표2: 노후를 고려한 취미·여가활동 시도 여부
 - 지표3: 현재 여가 활동의 노후 지속 여부에 대한 인식
 - 현재 여가생활의 적극성
 - 지표4: 현재 취미·여가활동
 - 지표5: 현재 하고 있는 취미·여가활동의 지속성
 - 소영역별 중요도
 - 지표6: 노후여가 관여도, 현재 여가생활의 적극성에 대한 절대적 중요도
 - 지표7: 노후여가 관여도, 현재 여가생활의 적극성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2. KB 노후준비지수 구성도

○ KB노후준비지수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재무적 관점’과 함께 건강, 사회적 관계, 심리적 안정을 포함한 ‘비재무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함.

<그림> KB노후준비지수 구성도



3. 석상훈 등(2011)의 노후준비지표³⁸⁾

○ 경제적 노후 준비

- ① 노후생활의 경제적 여유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 ② 현재 가계의 총자산을 계산해 보고 있다.
- ③ 절약하여 생활하고 있다.
- ④ 저축하고 있다.
- ⑤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등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 ⑥ 창업이나 투자할 의향이 있다.
- ⑦ 생활비 마련을 위해 역모기지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
- ⑧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기회가 있다면 보수가 주어지는 일을 할 의향이 있다.
- ⑨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영 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
- ⑩ 개인연금이나 보험상품 등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

○ 사회·정서적 노후 준비

- ① 이웃이나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② 친구, 친지 혹은 마음 맞는 이웃과 자주 관계를 맺는 편이다.
- ③ 가족과 마음을 터놓고 지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④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운동이나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⑤ 노후 사회봉사활동을 위해서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편이다.
- ⑥ 노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습회 등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⑦ 여가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편이다.
- ⑧ 앞으로 여가활동시간이나 종류를 늘릴 의향이 있다.
- ⑨ 가족 및 친지들의 상실에 대해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⑩ 노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종교활동에 참여하려고 하는 편이다.

○ 신체적 노후 준비

- ① 체질과 건강을 고려하여 식생활을 하는 편이다.
- ②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유지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③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지나친 음주는 피하는 편이다.
- ④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흡연은 가급적 피하는 편이다.
- ⑤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보약이나 건강식품을 먹는 편이다.
- ⑥ 충분한 수면시간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⑦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필요시마다) 건강진단을 받는 편이다.
- ⑧ 만성질환을 조절하거나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⑨ 규칙적인 생활로 무리하지 않는 편이다.
- ⑩ 평상시 나 스스로 나의 건강상태에 대해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8) 석상훈 등. 2011.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와 기대(Ⅱ): 제3차(2010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 부가조사 분석보고서」. 국민연금연구원.

4. 설문조사표

농업인 노후준비 실태조사표

현지통신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으로 활동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은 “농업인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 대안”에 관한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현지통신원 여러분의 노후 준비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려고 합니다. 현지통신원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조사표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조사표는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조사내용은 연구의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모든 조사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현지통신원 여러분의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현지통신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1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사표 작성 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부

최경환(02-3299-4348), 박대식(02-3299-4345), 최용욱(02-3299-4392)

[통신원 인적사항]

성명	통신원 번호			
주소	도)	군)	읍면동	리
연락처	자택	() -	핸드폰	- -

※ 조사 결과를 정리할 시간이 빠듯한 관계로 **12월 27일(화)까지 조사표가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사표를 받으시는 대로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통신원(응답자)의 일반 현황

1. 응답자(통신원) 일반 현황

성별	☐ ① 남 ☐ ② 여	연령	만 ()세
학력 (중퇴 포함)	☐ ① 무학 ☐ ②초등학교 졸업 ☐ ③중학교 졸업 ☐ ④고등학교 졸업 ☐ ⑤대학교 졸업 ☐ ⑥대학원 졸업		
배우자 유무	☐ ① 배우자 있음 ☐ ② 미혼 ☐ ③ 사별 ☐ ④ 이혼 ☐ ⑤ 별거		
부모 부양 여부	☐ ① 전적으로 부양 ☐ ② 부분적으로 부양 ☐ ③ 가끔 용돈만 제공 ☐ ④ 전혀 부양하지 않음		

2. 선생님댁의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선생님 부부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① 부부 ② 부부 + 자녀(미혼) ③ 부부 + 자녀(기혼) ④ 부부 + 손자녀
 ⑤ 부부 + 자녀(기혼) + 손자녀 ⑥ 부부 + 자녀(미혼) + 손자녀
 ⑦ 부모 +부부 + 자녀 ⑧ 조부모 + 부모 + 부부 + (자녀)
 ⑨ 조부모 + 부부 + 자녀 ⑩ 본인 혼자 살고 있음

3. 선생님은 어떤 농사(작목)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농사를 짓고 계시다면, 비중이 큰 순서대로 세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 선생님 댁의 지난해(2011년) 연간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소득원		금액(만원)	비고
근로 소득	농업소득	연간 _____ 만원	농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농업 경영비를 뺀 순소득을 의미함.
	농업 이외 근로소득	연간 _____ 만원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 사업 또는 취업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을 의미함.
자산 소득	금융소득	연간 _____ 만원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 차익 등이 포함됨.
	부동산소득	연간 _____ 만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 임대료, 부동산 매매 차익 등이 포함됨.
	개인연금, 퇴직금 등 기타 자산소득	연간 _____ 만원	보험회사(농협 포함)에 가입했던 개인연금, 직장 퇴직금 받은 퇴직금,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함.
공적이전소득		연간 _____ 만원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금, 각종 직불금 및 기타 정부보조금을 합한 것임.
사적이전소득		연간 _____ 만원	가족이나 친척, 친지 등으로부터의 보조금을 말함.

5. 선생님 댁에서 소유하고 계신 토지자산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규모(평)	금액(만원)
논		
밭		
과수원		
임야, 초지		
창고(저온저장고 등)		
축사		
시설하우스		
유리온실		
기타(무엇:)		

※ ‘금액’은 인근 지역의 거래실적을 참고하시고,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6. 선생님 댁에서 판매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가축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규모(두수)	금액(만원)
한우		
젓소		
돼지		
닭		
개		
염소		
오리		
양봉		
기타1(무엇:)		
기타2(무엇:)		

※ ‘금액’은 최근의 거래실적을 참고하시고,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7. 선생님 댁은 현재 부채가 있습니까?

☐

- ① 있다. ⇒ 현재 부채 총액 ()만 원
 ② 없다.

8. 선생님 댁은 농사 외에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

- ① 농사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전업농이다.
 ② 농사 이외에 다른 사업을 더 크게 하고 있는 겸업농이다.
 ③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만 농사를 더 많이 하는 겸업농이다.

II.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관련

1. 선생님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십니까?

☐

- ① 예(☞문2로) ② 아니오(☞문1-2로)

1-2. 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십니까?

☐

- 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② 국민연금을 믿을 수 없어서
 ③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서 ④ 잘 알지 못해서
 ⑤ 다른 것으로 충분히 노후준비 하고 있어서
 ⑥ 별다른 이유없다
 ⑦ 이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받고 있어서
 ⑧ 기타(무엇:_____)

2. 국민연금을 처음 가입할 때 몇 세이셨습니까?

만 세3.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하십니까? 월 원

4. 현재 납부하고 계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십니까?

☐

- ① 매우 부담된다 ② 약간 부담된다 ③ 적정하다
 ④ 별로 부담 안된다 ⑤ 전혀 부담 안된다

5. 장차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재 납부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납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6. 선생님의 배우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셨습니다가?

☐

① 그렇다(☞문7로)

② 아니다(☞문6-1로)

6-1. 앞으로 배우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6-2. 앞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면 선생님의 배우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7. 선생님의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이웃, 친지의 권유로

② 정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홍보를 보고

③ 부부가 협의해서

④ 자녀의 권유로

⑤ 기타(무엇:_____)

7-1. 배우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째

7-2. 배우자는 현재 매월 얼마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까?

○ 국민연금보험료 : 월

원

7-3.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십니까?

☐

① 매우 부담된다

② 약간 부담된다

③ 적정하다

④ 별로 부담 안된다

⑤ 전혀 부담 안된다

8. 선생님은 현재 농업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은 적이 있다

③ 전혀 모른다.

9.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최근에 통보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생님이 앞으로 받으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나 됩니까?

매월		만원
----	--	----

10. 선생님 님은 개인연금을 몇 개 가입하고 있으십니까?(배우자도 포함)

- ① 가입하지 않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⑥ 5개 이상

11. 선생님은 앞으로 개인연금을 가입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2. 선생님이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② 개인연금이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③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④ 다른 준비만으로도 노후대책이 충분하므로
⑤ 기타()

III. 노후 준비 실태와 계획

1. 선생님은 노후준비를 언제부터 해오셨습니까?

- ① 오래전부터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 ② 오래전부터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했다.
- ③ 최근에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 ④ 당장의 생계유지에 급급하여 노후생활 준비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 ⑤ 기타:무엇:)

2. 선생님은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세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생활비 마련 ② 건강 ③ 의료비(병원, 약값 등) ④ 자녀 뒷바라지
⑤ 이웃과의 갈등 ⑥ 외로움 ⑦ 주택마련 ⑧ 기타()

8. 선생님은 농지연금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 ① 매우 잘 안다 ② 어느 정도 안다 ③ 들어본 적은 있다
④ 잘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농지연금제이란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경지면적이 3ha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9. 선생님은 앞으로 농지연금제도를 노후대책으로 활용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문10으로) ③ 모르겠다(☞문10으로)

10. 농지연금을 노후대책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남은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하여
② 소유한 농지(자산)가 없으므로
③ 현재 준비한 대책으로도 충분하므로
④ 자녀가 농지연금 가입을 반대해서
⑤ 기타(무엇:_____)

11. 선생님은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 ① 매우 잘 안다 ② 어느 정도 안다 ③ 들어본 적은 있다
④ 잘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경영이양직불제란 고령농업인이 농사 짓던 농지를 다른 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연금 형태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2. 선생님은 앞으로 경영이양직불제를 노후대책으로 활용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3. 선생님은 농사를 짓다가 그만둘 경우 농지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

- ① 자녀들에게 상속하고 노후를 의지할 것이다.
②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노후 생활비로 쓸 것이다.
③ 판매한 자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것이다.
④ 판매한 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것이다.
⑤ 농지가 없어 해당사항이 없다.
⑥ 기타(무엇:_____)

14. 선생님 부부가 노후에 살 주택은 마련되어 있으십니까?

☐

- 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그대로 살 것이다.
- ②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보수해서 살 것이다.
- ③ 주택이 없어 새로 마련해야 한다.
- ④ 주택이 노후되어 철거 새로 지어야 한다.
- ⑤ 자녀와 함께 살 것이다.
- ⑥ 기타(무엇:_____)

15. 선생님은 노후준비에 관한 교육이나 상담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 ① 있다
- ② 없다(☞질문15-1로)

15-1. 선생님은 노후준비에 관한 교육이나 상담을 받아보실 기회가 있다면,

참여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모르겠다

16. 선생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노인이라면 몇 세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세부터

17. 선생님은 오래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질문18로)
- ⑤ 전혀 그렇지 않다.(☞질문18로)

18. 선생님은 왜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자식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 ② 국가 사회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 ③ 노인문제(빈곤, 질병, 소외, 고독감 등)의 발생 때문에
- ④ 노년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 ⑤ 기타(무엇:_____)

19. 선생님은 몇 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만 세

20. 선생님은 힘이 들어 농사를 못하게 될 경우 어떻게 소일하면서 지내실 생각

이십니까? 우선 순위로 세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① 텃밭 정도만 운동 삼아 할 것이다.
- ② 농사일을 전혀 하지 않고 취미생활을 할 것이다.
- ③ 마을이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할 것이다.
- ④ 농사 이외의 다른 일거리를 운동 삼아 할 것이다.
- 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
- ⑥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 ⑦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IV. 건강 관리

1. 선생님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 ④ 건강한 편이다 ⑤ 매우 건강하다

2.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면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만성질환은 몇 가지입니까?

- ① 3개 이상 ② 2개 ③ 1개 ④ 없다

만성질환의 예: 암,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중풍), 심근경색증, 협심증, 관절염, 골다공증, 소화성궤양, 만성간염, 폐결핵, 만성기관지염, 당뇨병, 갑상선 장애, 백내장, 만성신장질환 등

3. 선생님은 건강 측면에서의 노후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충분히 하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 ④ 거의 못하고 있다. ⑤ 전혀 못하고 있다.

4. 선생님은 현재 자신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그런대로 만족하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 ④ 별로 만족하지 못하다. ⑤ 전혀 만족하지 못하다.

5. 선생님은 앞으로 즐겁고 좋은 일들이 얼마나 생길 것 같습니까?

- ① 많이 생길 것 같다. ② 어느 정도 생길 것 같다. ③ 그저 그렇다.
- ④ 별로 생기기 않을 것 같다. ⑤ 전혀 생기기 않을 것 같다.

6. 선생님은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끼시는 때가 있습니까?

☐

- ① 자주 느낀다. ② 가끔 느낀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느끼지 않는다. ⑤ 전혀 느끼지 않는다.

7. 선생님께서는 지난 한 달 동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 또는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증상	발생 빈도		
	없었음	가끔 있었음	자주 있었음
어깨가 결리고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손발의 감각이 둔하고 저리다			
밤중에 소변을 자주 본다			
숨이 가쁘다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어지럽다			
배가 더부룩하다			

V. 기타

1. 선생님 부부는 노후 준비를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어느 정도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준비 정도					이 답 란	중요도					이 답 란
	전혀 준비안됨			매우 준비됨			전혀 중요하지 않음			매우 중요함		
생활비 마련(경제적 준비)	1	2	3	4	5		1	2	3	4	5	
건강 관리	1	2	3	4	5		1	2	3	4	5	
보건·의료비	1	2	3	4	5		1	2	3	4	5	
주거 마련	1	2	3	4	5		1	2	3	4	5	
소일거리(소득원)	1	2	3	4	5		1	2	3	4	5	
취미·여가 생활	1	2	3	4	5		1	2	3	4	5	

- 준비정도는 선생님의 노후준비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경우 1점, 충분히 준비된 경우 5점을 기준으로 준비정도의 점수를 응답란에 적어 주십시오.
- 노후준비의 중요도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점수)를 응답란에 적어 주십시오.

2. 선생님은 노후 생활이 현재 생활과 비교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훨씬 좋아질 것이다. ② 약간 좋아질 것이다. ③ 그저 그럴 것이다.
 ④ 약간 나빠질 것이다. ⑤ 매우 나빠질 것이다.

3. 선생님은 노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선생님의 앞으로의 계획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1. 노후에도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이다			
2. 농사 이외의 돈 되는 소일거리를 하고 싶다			
3.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4. 자녀들을 계속 뒷바라지 하려고 한다			
5. 본인의 지식과 기술을 이웃에 전해주고 싶다			
6. 국내외 여행을 다니고 싶다			
7. 취미 생활을 하고 싶다			
8.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			
9.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다			

※ 비번신 중에도 조사표를 끝까지 작성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2 · 간행물위원회 안내 및 발간목록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연구 20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 분석	조재국
연구 2011-03	천사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연구 2011-04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실비아
연구 20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연구 2011-06	소바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농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연구 20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연구 20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연구 2011-09	인구집단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김동진
연구 20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방안	황나미
연구 20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연구 2011-12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연구 2011-13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연구 2011-1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연구 20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연구 2011-16-1	선진국의 아동사래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연구 20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고경환
연구 20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연구 20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연구 2011-17-4	2011 보건복지제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연구 2011-17-6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원종욱
연구 20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연구 2011-18	공정사회를 위한 천사민정책 개선방안	이태진
연구 20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연구 20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연구 20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연구 20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연구 20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연구 20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연구 20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연구 20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29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 구조 연구	강혜규
연구 20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이삼식
연구 20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연구 20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연구 20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연구 2011-37-1	출산율예측모형개발	이삼식
연구 2011-37-2	저출산에 대한 민간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외부)
연구 20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연구 2011-37-4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연구 20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외부)
연구 20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연구 2011-37-7	자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연구 2011-37-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외부)
연구 20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 20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소정
연구 20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연구 20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연구 20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I)	오영희
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판	이삼식
연구 20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합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4 • 간행물위원회 안내 및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42	취약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친사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이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대중
연구 2012-03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욱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고경환
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윤석명·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완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 자산 분포와 노후빈곤 가능성 분석	남상호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31	현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연구 2012-3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연구 2012-34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 (터키)	이현주
연구 2012-35	인구구조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2-3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2-37	2012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2-38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강혜규
연구 2012-39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김미숙
연구 2012-40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김성희
연구 2012-4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2-42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	박수지
연구 2012-43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정영철
연구 2012-44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2	장영식
연구 2012-45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세록
연구 2012-46	보건복지분야 조사통계 선진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2-47-1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이삼식
연구 2012-47-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저출산정책연계방안	이상립
연구 2012-47-4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김현식
연구 2012-47-5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이철선
연구 2012-47-6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염주희
연구 2012-47-7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이삼식
연구 2012-47-8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안락수정 사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황나미
연구 2012-47-9	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최정수
연구 2012-47-10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정은희
연구 2012-47-1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현식
연구 2012-47-12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이현창)
연구 2012-47-13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이상립
연구 2012-47-14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정경희
연구 2012-47-15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 M시 종적연구(II)	오영희
연구 2012-47-16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17	노인장기요양욕구필요도측정방식개발	이윤경
연구 2012-47-18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정경희
연구 2012-47-19	복지용구사업장규모추계와활성화방안	김대중
연구 2012-47-20	저출산현상의동태적분석을위한지역사례조사	박종서
연구 2012-47-21	100세 시대 대응 고령화 지역 연구	이윤경
연구 2012-47-22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영국 편	이삼식
연구 2012-47-23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국가의 활기찬고령화(active ageing)정책을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2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II)	오영희

6 • 간행물위원회 안내 및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47-25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정정희
연구 2012-47-26	출산력시계열자료 구축 및 분석	신창우·이삼식
연구 2012-47-2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공적전달체계 개편 방안	정홍원
연구 2012-47-28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자녀의 만혼화	(이만우)
연구 2012-47-29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교육 정책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0	농업인의 노후준비실태와 정책대안	(최경환)
연구 2012-47-31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 연구	박중서
연구 2012-4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오영호
연구 2012-49-1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이상영
연구 2012-49-2	지방자치단체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김동진
연구 2012-49-3	이태지역 및 유림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및 정책과제	최은진
연구 2012-49-4	건강증진서비스이용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 연구	최은진
연구 2012-50-1	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김남순
연구 2012-50-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 방안	김정선
연구 2012-51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빈곤정책	홍석표
연구 2012-52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3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2-5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알자리확충 전략II: 영유아돌봄 및 초등 방과후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2-54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
연구 2012-55-1	2012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최현수
연구 2012-55-2	2012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남상호
연구 2012-56-1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정영호
연구 2012-56-2	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연구	김대중
연구 2012-57	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2-58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년차)	이연희
연구 2012-59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이상영
연구 2012-60	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실태	황나미
연구 2012-61	사회보장 재정주계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원종욱
연구 2012-62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신영석
연구 2012-63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윤강재
연구 2012-64	우리나라의 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영
연구 2012-65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	고경환
연구 2012-66	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김혜련
연구 2012-67	보건복지 지표·지수 연구	남상호
연구 2012-68	2012년 지역복지개발평가센터 운영보고서	김승권
협동 2012-1	2012년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신호성
협동 2012-2	2012년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호